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당소득의 범위에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신청시 과세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련 서식 정비 및 재외국민·외국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세대원의 주택보유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3.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 ① 영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수익자가 예탁한 자금에 대한 수익지분(이하 "이 조에서 수익지분"이라고 한다)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종합투자계좌 만기 전에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환매 혹은 해지(이하 "환매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에서 환매등이 발생한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2. 1호 외의 경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에서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②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 수 또는 중도 환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

③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계좌별로 하나의 과세단

위로 하여 계산한다.

④ 종합투자계좌의 명의변경으로 발생한 이익은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중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을 각각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제1호”를 “같은 조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78조의3제5항제1호”를 “영 제78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를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 등에 대한 확인 등)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나목 및 다목의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사본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3조의4제7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26호의2 중 “별지 제24호의4서식(4)”를 “제24호의4서식(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9호의20 및 제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의20. 영 제207조의2제1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9서식에 따른다.

45. 영 제2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9호서식에 따른다.

제103조제12항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5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부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부표5를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6),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2) 부표, 별지 제24호서식(6),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9호의12서식, 별지 제29호의13서식, 별지 제29호의13서식 부표 및 별지 제29호의1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1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3

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1), 별지 제37호서식(2), 별지 제37호의3서식, 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4), 별지 제40호서식(5),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83호의4서식, 별지 제83호의8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별지 제84호서식 부표3,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1호서식(외국납부세액공제, 가감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30호의4서식, 별지 제84호서식(제4쪽 중 제2쪽 중 “국외전출자 주식등”, 제4쪽 중 제4쪽에서 개정된 부분에 한정한다),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연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직업분류번호
1	서비스 종사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422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423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431
		관광 서비스 종사원	4421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4422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5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2
		통신 관련 판매 종사자	531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71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74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5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6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
		기타 기능 관련직	79
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81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82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83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4
		기계 제조·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85
		전기·전자 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86
		운전 및 운송 관련 기계 조작직	87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88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9
5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3
		청소 및 건물 관리 단순 노무직	94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5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9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24-328호(2024. 7. 1.)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5, 5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94, 95, 99)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423, 431, 531)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421, 442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개정 2026. 3. 0.>

[ ] 연금계좌 이체명세서

([ ]가입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접수자 보관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가입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금융기관	이관	④ 법인명(상호)	⑤ 지점명
	수관	⑥ 법인명(상호)	⑦ 지점명

I. 이체하는 연금계좌 명세	⑧ 연금계좌구분	[ ] 연금저축계좌 [ ] 퇴직연금계좌 ([ ] DC [ ] IRP [ ] 중소기업연금 [ ] 과학기술인연금)	
		[ ] 연금수령 개시 전	[ ] 연금수령 개시 후
	⑨ 계좌번호		
	⑩ 가입일자		
	⑪ 납입기간 만료일		
	⑫ 연금개시일자		
	⑬ 이체일자		
	⑭ 연금 실제 수령연차		⑮ 이체연도 연금수령 여부 [ ] 여, [ ]부

II. 이체금액 명세	구분		이체액			
	과세제외금액	⑯ 이체하는 연도의 납입액				
		⑰ 그 외				
	이연퇴직소득	⑱ 세액이연분				
		⑲ 전환분				
	⑳ 세액공제(소득공제)분					
	㉑ 운용수익		(+)		(-)	
	합 계					

III. 과세이연 정보	이연퇴직소득세	㉒ 세액이연분	
		㉓ 전환분	

III. 외국납부 세액 정보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첨부 :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위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연금계좌 이체명세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이관 연금계좌 취급자 (인)

수관 연금계좌 취급자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성 방 법

1. ⑭연금 실제 수령연차란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최초 연금 개시 신청 후 이체하는 날까지 해당계좌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적습니다.
2. ⑮이체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연금수령 여부를 적습니다.
3. ⑯이체하는 연도의 납입액란에는 이체하는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서 인출한 금액에 있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⑰그 외란에는 ⑯ 이체하는 연도의 납입액 외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5. ⑱세액이연분(이연퇴직소득)란과 ㉒세액이연분(이연퇴직소득세)란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세 징수를 이연한 퇴직소득과 해당 미징수한 퇴직소득세를 각각 적습니다.
6. ⑲전환분(이연퇴직소득)란과 ㉓전환분(이연퇴직소득세)란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에 따라 소득이연퇴직소득에서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과 미징수한 퇴직소득세를 각각 적습니다,
7. ⑳란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2013년 1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8. ㉑란에는 이체하는 총 금액에서 ⑯ ~ ⑳란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의 값이면 (+)란에, 음의 값이면 (-)란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4] <개정 2026. 3. 0.>

(앞쪽)

과세 기간	. . . ~ . . .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1.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명세

(단위 : 원, %)

① 연번	소득지급자		간접투자회사등	원천징수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② 상호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④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⑤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⑥ 외국원천징수세율	⑦ 국내원천징수세율	⑧ 공제율	⑨ 조정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⑤×⑧)
1								
2								
3								
4								
5								
6								
7								
8								
9								
합 계								

2. 공제대상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단위 : 원, %)

⑩ 소득구분	⑪ 기준소득	⑫ 조정계수	⑬ 조정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합계	⑭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⑫×⑬)
합 계				

「소득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② 상호란 및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④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란: 소득을 지급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등(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명을 적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 중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하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을 대신하여 소득의 종류(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 그 외 연금소득)를 적습니다.
4. ⑤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란: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투자회사별 또는 투자신탁별 간접투자외국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이 때, 당기분과 이월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⑥ 외국 원천징수세율란:「소득세법 시행령」제189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율을 적되,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와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의 경우에는 14퍼센트로 기재합니다. 다만, 연금소득 및 이자소득의 경우 적지 않습니다.
6. ⑦~⑩ 국내 원천징수세율란: 「소득세법」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은 14퍼센트,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은 9퍼센트를 기재합니다. 다만, 연금소득 및 이자소득의 경우 적지 않습니다.
7. ⑧ 공제율란:「소득세법 시행령」제189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적습니다. 다만, 연금소득 및 이자소득의 경우 0.55를 적습니다.
8. ⑩ 소득구분: 지급받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연금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9. ⑪ 기준소득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외국납부법인세액, 연금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 적지 않습니다.

> 기준소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2천만원 - [연금소득 -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선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금액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주택매입자금]

10. ⑫ 조정계수란: 연금소득의 경우 단일 조정계수인 0.89를 적으며,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다음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자 · 배 당 소 득 조 정 계 수 표

기준소득	이자소득 조정계수	배당소득 조정계수
1천 400만원 이하	1	1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89	0.99
5천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0.73	0.88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53	0.76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48	0.7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44	0.7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40	0.67
10억원 초과	0.35	0.64

11. ⑬ 조정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합계란: ⑩소득구분에 기재한 소득의 종류에 대응되는 ⑨ 조정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1)] <개정 2026. 3. 0.>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 이자소득 [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비거주자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소득자 (투자자)	① 성명					
	② 주소					
	③ 납세자번호			④ 생년월일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⑦ 국적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소득지급자	⑧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⑨ 대표자(성명)			
	⑩ 납세자번호		⑪ 전화번호	
	⑫ 주소 또는 소재지			
대리인	⑬ 대리인유형	⑭ 성명 또는 법인명		⑮ 납세자번호
	[ ] 납세관리인 [ ] 그 밖의 대리인			
	⑯ 주소 또는 소재지			
	⑰ 납세지 관할 세무서		⑱ 전화번호	

년 월 일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2. 소득지급자는 이 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 "① 성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4. "②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5. "③ 납세자번호"란, "⑩ 납세자번호"란 및 "⑮납세자번호"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되,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2)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4)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6. "④ 생년월일"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7. "⑤ 거주지국"란 및 "⑥ 거주지국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8. "⑧ 법인명(상호)"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합니다.
9. "⑨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⑫주소 또는 소재지"란: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⑬ 대리인유형"란부터 "⑱ 전화번호"란까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19-13(1)] (Front)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 ] interest income [ ]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overnment Bonds and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for non-residents)

[For use in case where GB and MSB are not acquired, held and transferred through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 Check the appropriate blank [ ] or box ☐.

Income Recipient (Investor)	① Name					
	② Address					
	③ Taxpayer ID No.			④ Date of Birth		
	⑤ Country of Residence		⑥ Resident Country Code		⑦ Nationality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income tax exemption under Article 119-3 (4)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179-4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Income Recipient (Investor)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I hereby confir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and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Year Month Day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Official Seal

210mm×297mm[백상지(80g/㎡)]

(Back)

Income Payer	⑧ 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Korean) (English)		
	⑨ Legal Representative (Name)			
	⑩ Taxpayer ID No.		⑪ Phone No.	
	⑫ Address or Location			
Attorney-in-fact	⑬ Type of Attorney-in-fact	⑭ Name of Attorney or Corporate Entity		⑮ Taxpayer ID No.
	[ ] Tax Agent [ ] Other			
	⑯ Address or Location			
	⑰ Competent Tax Office		⑱ Phone No.	

Year Month Day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Filing Instructions

1. 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non-residents to apply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or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under Article 179-4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Income Tax Act, or to amend the application after tax exemption has been granted. Therefore,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is a resident of Korea.
2. The income payer shall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3. "① Name". Enter the name of the income recipient. If the income recipient is a foreign national, enter the full name in English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4. "② 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a street number, a street name, a city, a state, a country and a postal code.
5. "③ Taxpayer ID No., ⑩ Taxpayer ID No. and ⑮ 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an):
      1) Foreign corporation: Corporate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or the Taxpayer ID No. of the country of residence in the absence of the relevant number
      2) Overseas Korean with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your Korean Resident Card
      3)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the passport number and date of birth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4)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who maintains a Korean citizenship: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6. "④ Date of Birth". In case where the income recipient is an individual, enter the date of birth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7. For "⑤ Country of Residence", "⑥ Resident Country Code" and "⑦ Nationality",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ountry Codes.
8. For "⑧ 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enter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f the income payer is a corporation, and a trade name if the income payer is an individual.
9. For "⑨ Legal Representative (Name)", enter the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the business operator.
10. For "⑫ Address or Location", enter the address of the income payer's head office (a place of business), or in case where there is no place of business, the income payer's address.
11. Fill in "⑬～⑱" when an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210mm×297mm[백상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3. 00.>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과세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외국납부세액공제		A52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합계	A26								
			분납신청	A27								
			납부금액	A28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외국납부세액공제		A52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가상자산		A49								
		인적용역		A59								
		그 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외국납부세액공제		A53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배당소득		A60								
		외국납부세액공제		A61								
		가감계		A62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금융회사 등)	⑰ 그 밖의 환급세액					
					금융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 **참고사항**

1.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란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A49),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및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제119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A59)에 관하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 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나. ②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은 제외하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A26, A27, A28]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⑩)란에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인적용역·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27, A28,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징수세액(⑥ ~ 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 ~ 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 ~ ⑪)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가. 소득지급(④·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고, 퇴직·기타·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연금계좌(A21, A41, A48) 란은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가 작성하는 것이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퇴직소득의 경우 그 외(A22) 란에 기재합니다.

나. 징수세액(⑥ ~ 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 ~ 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 ~ ⑪)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2)

다. 근로·사업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A27)은 분납할 인원(④), 징수세액(⑥~⑧)만 기재, 징수세액란은 A04(A26) = A05(A27) + A06(A28)이 되도록 적습니다.

1)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4),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6)

2)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30) = (A25 + A26),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A30) = (A25 + A28)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A27)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A28)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A28)

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연금소득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A4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 ~ 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 ~ 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 ~ 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⑱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 · ·]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적습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⑱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⑨]은 ⑲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⑰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제10쪽)를 제출해야 합니다.

5) ㉑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㉑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마.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 C46]의 합계를 적습니다.

바.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이자(A50)·배당(A60) 및 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신고·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납부: 귀속월 201X년 7월, 지급월 201X년 12월, 제출일 201X년 1월

2) 7월 신고·납부: 귀속월 201X년 1월, 지급월 201X년 6월, 제출일 201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0년 4월 반기납 포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5. 수정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가산세)	농어촌특별세
거주자(개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비과세종합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 등 예탁금		C06								
			조합 등 출자금		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20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23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C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		C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C27								
			청년도약계좌		C98								
			청년미래적금		C99								
			장병내일준비적금		C31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세금특례	기타 이자·배당소득		C11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5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55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당소득		C5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		C9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94								
		세금우대	이자소득(9%)		C12								
			배당소득(9%)		C2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9%)		C95								
			조합 등 예탁금(5%)		CA1								
			조합 등 출자금(5%)		CA2								
			조합 등 예탁금(9%)		CA3								
			조합 등 출자금(9%)		CA4								
		일반세율(14%) 분리과세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득		C1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C18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8								
			개인투자용국채		CA5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		C39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C96								
		일반과세	이자소득		C14								
			배당소득		C24								
		고배당기업	배당소득(9%)		C91								
			배당소득(25%)		C92								
		비실명소득	비실명이자소득		C15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배당소득 계			C30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59								
	징수세액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3.5%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6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8								
		해지추징 계			C50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비거주자(개인)	이자		제한, 20%	C61								
	배당		제한, 20%	C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인적용역	20%, 3%	C64								
		사용료	제한, 20%	C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부동산 양도	10%, 20%	C67								
	기타	가상자산	10%, 20%	C77								
		그 외	20%	C68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69								
	비거주자 계			C70								
법인원천	내국법인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신탁재산 분배	14%	C73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비과세 소득 등		C76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	이자	제한, 20%	C81								
		배당	제한, 20%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3%	C84								
		사용료	제한, 20%	C85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부동산 양도	10%, 20%	C87								
		기타 가상자산	10%, 20%	C89								
		기타 가상자산 외	20%	C88								
	법인세 계			C90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소득(A49),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 ~ ⑧) 및 납부세액(⑩·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27, A28,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1. [C01-C10, C20, C23, C27, C31, C40, C60]: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비과세 이자·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C19, 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C01-C10, C20, C23, C28, C40] 란 작성대상 저축상품 제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C11, C54, C55, C56, C57, C93, C94]은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4. [C12, C22, C95]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5. [C13, C18, C39, C58]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20%,15%,14% 등)이 적용되고,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7.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9. [C26]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10. [C30]은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C59],[C69] 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명세를 적습니다.
12. [C41](벤처기업투자신탁)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3.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4.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저축납입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제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15. [C4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쪽)[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16.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7. [C4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8. [C48](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9. [C50]란은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징세액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합니다.
20. [C61-C70, C77](비거주자)란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제1쪽의 해당 소득 [A25],[A40],[A50],[A60],[A69],[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21. [C71](이자)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22. [C73](신탁재산 분배)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23. [C74](신탁업자 징수분)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4.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5. [C76](비과세법인소득)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6. [C81-C89]란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7. [C90](법인세계)란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o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원)

소득의 종류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 원	소득 지급액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③ 차감세액	④ 분납금액	⑤ 조정환급세액	⑥ 환급신청액
							② 계	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				
합계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이 부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제1쪽)의 ㉑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을 적습니다.
   지급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③ 지급연월을 적습니다.
5. 코드란은 환급 신청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제1쪽의 코드 참조)를 적으며,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종(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하며, 기납부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명세서(제8쪽)"를 작성해야 합니다.
7. ③ 차감세액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④ 분납금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⑥소득세 등(A05 또는 A27)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9. ⑤ 조정환급세액란은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으며, ④ 분납금액에서 ③ 차감세액과 ⑥ 환급신청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합계의 ⑥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㉑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 및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기간은 환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업자등록번호 □□□-□□-□□□□□

기 납 부 세 액 명 세 서

(단위: 원)

❶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① 소득세 등	②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합 계								

❷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③ 소득세 등	④ 농어촌 특별세	종(전)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합 계										

❸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 유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③ - ①)	② 농어촌 특별세 합계	④ 농어촌 특별세 합계	차이금액 (④ - 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하여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6.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고 적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업자등록번호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단위: 원)

❶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구분	세목 및 코드	① 발생환급세액	②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	③ 당월발생 환급세액 (① - ②)

❷ 환급세액 조정 현황

귀속연월	지급연월	전월미환급세액			⑦ 당월발생 환급세액	⑧ 조정대상 환급세액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
		④ 전월 미환급세액	⑤ 기환급 세액	⑥ 차감잔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는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명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란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 해당되는 사유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세목 및 코드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세목 및 해당 세목의 코드를 적습니다.
4. [2. 환급세액 조정 현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⑦ 당월발생환급세액란에는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의 ③ 당월발생급세액을 적습니다.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은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업자등록번호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단위: 원)

승계대상 사업자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일자	근거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 환급세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란은 피합병법인 및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란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적습니다.

승계근거	합병	사업자단위과세전환	그 밖의 원인
코드	1	2	3

4.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란은 승계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 ③ 지급연월,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착오 또는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26. 3. 00.>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 ] 발행자 보고용

※ 제2쪽,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 인 명 (상 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 이익 여부	
			[ ] 거주자 / [ ] 비거주자				[ ] 여	[ ] 부

지 급 명 세

⑭ 지급일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등	⑲ 금융상품코드	⑳ 유가증권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 ⑯ 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⑰ 소득의 종류가 "11~49"인 경우 이자소득, "51~99"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외국에 소재하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 등을 통해 지급하면서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거나, 확인되는 중간 지급자를 소득자로 대신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서식제목: 해당 자료(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명 【 】안에 "√"표시를 하며, 관리번호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① 법인명(상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3. ①-1 영문법인명(상호)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⑤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8. ⑥ 성명(상호)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10. ⑦-1의 생년월일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11. ⑧ 소득자구분코드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실 지 명 의 구 분			명 의	번 호	코 드
개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성 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 국 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 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주민등록증(재외국민)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3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 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 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국·외국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1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또는)	
				법인식별기호	231
단체	개인단체	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단체명	고유번호	311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성명(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빈칸 또는 비실명인 경우				빈칸	999

12. ⑨ 주소란: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13. ⑩ 거주구분란: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4. ⑪ 거주지국과 ⑪-1 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5. ⑫ 계좌번호(발행번호)란: 숫자만 적고,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이자·배당소득자가 채권·주권 등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의 발행번호를 수록하며, 채권등의 종류, 발행일,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발행번호를 적습니다.
16. ⑬ 신탁이익 여부란: "[ ]"안에 "√"표시를 하여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7. ⑭ 지급일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18. ⑮ 귀속연월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9.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란: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의 종류,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고, 아래 표 중 ⑯ 과세구분의 개인 분리과세란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⑯ 과세구분														
개인									법인					과세제외(「소득세법」상 미열거 소득/법인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 소득)
비과세, 면제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 대상소득(소액 부징수 포함)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저율 과세(<14%)	고율 과세(>14%)	비실명	일반세율(14%)	기본세율(6~45%)	일반과세	일반과세(Gross-up) 기타세율	일반세율		비과세, 면제	투자신탁 재산 귀속 소득	신탁재산 귀속 소득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E	L	H	R	O	B	T	D	G	C	X	F	I	W	N

⑰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11~49)		배당소득(51~99)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 16①1)	11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소득세법 § 17①1)	51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 16①2)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소득세법 § 17①2)	52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포함)의 이자(소득세법 § 16①3)	13	의제배당(소득세법 § 17①3, 법인세법 § 16)	53
신용계·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득세법 § 16①4)	1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 § 17①4)	54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 16①5)	1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 17①5)	55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 16①6)	16	외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소득세법 § 17①6)	56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득세법 § 16①7)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소득세법 § 17①7)	57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소득세법 § 16①8)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 § 119 2호, 법인세법 § 93 2호)	5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 미만 등)(소득세법 § 16①9)	19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 17①8)	5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 이상)(소득세법 § 164①8)	2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득세법 § 16①10)	21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법 § 16①11)	22	주가연계증권(소득세법 시행령 § 26의3①1, ELS)	60
채권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 § 26④)	23	기타 파생결합증권(소득세법 시행령 § 26의3①2, DLS)	6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시행령 § 114의2②)	24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 § 26의3②)	62
그 밖에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 § 16①12)	25	그 밖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 § 17①9)	63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 § 16①13)	26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 § 17①10)	64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상기 이외에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법인세법 § 93 1호)	27	상장지수증권(소득세법 시행령 § 26의3①3, ETN)	65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 17①5의3)	66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 17①5의4)	67

⑱ 조세특례 등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벤처투자조합등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 § 14④)	PA
		벤처투자조합등이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 § 14④)	PB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조특법 § 86의3)	SB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 § 20①)	PC
장기주택마련저축(조특법 § 87)	SC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 121의2③)	PD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 § 87)	SD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조특법 § 21①1)	PE
농어가목돈마련저축(조특법 § 87의2)	SE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조특법 § 21①2)	PF
선박투자회사 배당(조특법 § 87의5)	SF	금융기관 국외발행(매각) 외화표시어음과 예금증서의 이자(조특법 § 21①3)	PG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 배당(조특법 § 87의6)	SG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 § 21의2①)	PU
비과세종합저축(조특법 § 88의2)	SH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조특법 § 29)	PH
우리사주조합 배당(조특법 § 88의4⑨)	SI	영농조합법인 배당(조특법 § 66②, ③)	PI
농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조특법 § 88의4⑩)	SJ	영어조합법인 배당(조특법 § 67②, ③)	PJ
조합 등 출자금(조특법 § 88의5)	SK	농업회사 배당(조특법 § 68④)	PK
세금우대종합저축(조특법 § 89)	SL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L
조합 등 예탁금(조특법 § 89의3)	SM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M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조특법 § 91의12)	SU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득세법 § 12 1)	PN
재형저축(조특법 § 91의14)	SW	발행일-상환일기준일이 10년 이상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구 소법 § 129①1가, 조건부채권 제외) * 근거법조항 중 '구'는 「소득세법」(2007. 12. 19., 법률 제8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함-라.	PO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조특법 § 91의15)	SX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소득세법 § 129②1)	P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 § 91의18)	SZ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소득세법 § 129②2본문)	PQ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 § 87)	TA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소득(소득세법 § 129③2 단서)	PR
장병내일준비적금(조특법 § 91의19)	TB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 § 129④)	PS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배당 (조특법 § 87의7)	TC	외국법인의 국제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 93의2)	PV
청년희망적금(조특법 § 91의21)	TD	해외채권으로 "PO"와 "PS"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PW
청년도약계좌(조특법 § 91의22)	TE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	PT
개인투자용 국채(조특법 § 91의23)	TF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한 경우	PY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PZ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26의2)	QA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27)	QB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 § 129⑤~⑧, 법인세법 § 73②·③)	QC
		그배당기업이 거주자에게 현금배당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조특법 § 104의27)	QD
		기타	ZZ

작성방법

20. ⑲ 금융상품코드란: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상품코드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적음].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백지신탁중인 주식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아닌 백지신탁코드(BLINDTRUST)를 기입하고,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해당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여 수정 제출합니다.

22. ㉑ 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인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보유기간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00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매도 시 또는 채권등의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의제원천징수 적용 채권등('95.12.31.이전 또는 '01.7.1. ~ '05.6.30. 사이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05.7.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경우 등)	55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7항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77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 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88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낮은 세율 적용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 채권이자구분란에 "66"을 적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99"로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3. ㉒ 지급대상기간란: 이자·배당소득 계산 시 사용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파생결합증권)에 따른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4. ㉓ 이자율 등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만 해당함)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할인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투자신탁의 경우 1,000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㉒지급대상기간에 원금, 이자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소득 지급 당시의 최종 원금으로 나눈 비율에 100을 곱한 숫자를 연환산하여 소수점 5자리까지 적습니다).

25. ㉕ 세율란: 실제 세액계산 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습니다(소액 부징수로 세액이 "0"인 경우에도 0%가 아닌 적용된 세율 등).

26. ㉖ 소득세·㉗ 법인세·㉘ 지방소득세 및 ㉙ 농어촌특별세란은 원단위 이하는 적지 않고, 소액 부징수(거주자인 경우 배당소득 1천원 미만,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배당소득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 성명)	② 사업자 (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 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⑦ 세액 집계현황		
						⑧ 소득세	⑨ 지방소득세	⑩ 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 · 외국인 (1 · 9)	⑮ 지급 년도	⑯ 지급 건수	⑰ (연간) 지급총액	⑱ 세 율	⑲ 소 득 세	⑳ 지 방 소 득 세	㉑ 계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해야 합니다.
2. ④ 연간 소득인원란: ⑫ 소득자 성명(상호)란에 적힌 소득자의 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3. ⑤ 연간 총지급건수란: ⑯ 지급건수란에 적힌 건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4. ⑪ 업종구분란: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저술가	940100	연예보조	940500	음료배달	940907	목욕관리사	940915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화가관련	940200	자문·고문	940600	방문판매원	940908	행사도우미	940916	대출모집인	940923
작곡가	940301	바둑기사	940901	기타 인적용역자	940909	심부름용역	940917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배우	940302	꽃꽂이교사	940902	다단계판매	940910	퀵서비스	940918	방과후강사	940925
모델	940303	학원강사	940903	기타 모집수당	940911	물품운반	940919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0926
가수	940304	직업운동가	940904	간병인	940912	병의원	851101	관광통역 안내사	940927
성악가	940305	봉사료 수취자	940905	대리운전	940913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940928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306	보험설계	940906	캐디	940914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중고자동차 판매원	940929

· 기타인적용역자 업종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인적용역자를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5. ⑭ 내 · 외국인란: 내국인인 경우는 "1"로, 외국인인 경우는 "9"로 적습니다.
6. ⑱ 세율란: "3%"로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로,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번호	⑪ 업종구분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외국인 (1·9)	⑮ 지급년도	⑯ 지급건수	⑰ (연간) 지급총액	⑱ 세율	⑲ 소득세	⑳ 지방소득세	㉑ 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업장 소재지		
	⑨ 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소		
⑫ 업종구분		※ 작성방법 참조	

⑬ 지급			⑭ 소득귀속		⑮ 지급총액	⑯ 세율	원천징수세액		
연	월	일	연	월			⑰ 소득세	⑱ 지방소득세	⑲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해야 합니다.
2.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소득자 보관용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⑪ 업종구분란: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저술가	940100	연예보조	940500	음료배달	940907	목욕관리사	940915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화가관련	940200	자문・고문	940600	방문판매원	940908	행사도우미	940916	대출모집인	940923
작곡가	940301	바둑기사	940901	기타 인적용역자	940909	심부름용역	940917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배우	940302	꽃꽂이교사	940902	다단계판매	940910	퀵서비스	940918	방과후강사	940925
모델	940303	학원강사	940903	기타 모집수당	940911	물품운반	940919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0926
가수	940304	직업운동가	940904	간병인	940912	병의원	851101	관광통역 안내사	940927
성악가	940305	봉사료 수취자	940905	대리운전	940913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940928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306	보험설계	940906	캐디	940914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중고자동차 판매원	940929

· 기타인적용역자 업종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인적용역자를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4. ⑭ 내·외국인란: 내국인인 경우는 "1"로, 외국인인 경우는 "9"로 적습니다.
5. ⑱ 세율란: "3%"로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로,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⑦ 비과세 소득	⑧ 연간 소득금액 계	⑨ 세액 집계현황			
								⑩ 소 득세	⑪ 지방 소득세	⑫ 농어 촌특별세	⑬ 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⑮ 소득자 성명 (상호)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외 국인	⑱ 지 급 연 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 세소득	㉒ 필요경비	㉓ 소득 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															
2															
3															
4															
5															
6															
7															
8															
9															
10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㉕부터 ㉘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계는 소득자별 ⑳(연간)지급총액 합계와, ⑧연간 소득금액계(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는 소득자별 ㉓소득금액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⑮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⑲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⑰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⑳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㉑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7. ㉓ 소득금액란은 ⑳ (연간)지급총액에서 ㉒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⑭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작 성 방 법

코드	소득구분
7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7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지역권등"이라고 함)
7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입주지체상금"이라고 함)
8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7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원고료등"이라 함)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6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 연금저축계좌 해지 등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별도로 적습니다.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
65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
64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77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78	사례금
79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0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코드 61, 63, 65, 78코드 제외)
62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코드 64, 68, 69, 71 ~ 77, 79코드 제외)

* 64코드: 필요경비 90% 적용, 1억원 초과 분은 필요경비 80% 적용, 다만, 서화·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억원 초과 분도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90(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70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 금액을 더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를 적용)
* 71, 74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2, 73, 75, 76, 79, 80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수입시기	필요경비
2018.3.31. 이전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018.4.1. ~ 2018.12.31.	100분의 70
2019.1.1. 이후	100분의 60

* 77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10㎜× 297㎜(백상지 80g/㎡)

귀속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번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련번호	⑭ 소득구분코드	⑮ 소득자 성명(상호)	⑯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⑰ 내·외국인	⑱ 지급연도	⑲ 지급건수	⑳ (연간)지급총액	㉑ 비과세소득	㉒ 필요경비	㉓ 소득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소득세	㉗ 농어촌특별세	㉘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0㎜× 297㎜(백상지 80g/㎡)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 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⑥일련번호	⑦작품코드	⑧지급 연월일			⑨ 총양도가액 (매매가액)	⑩지급액	⑪양도자		⑫양수자		⑬작가	⑭작품명	⑮재질	⑯크기 가로(㎜)×세로(㎜) 또는 작품호수 등	⑰제작 연도
		연	월	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성명 (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⑦작품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양화	동양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인쇄화	석판화	골동품	기타
작품코드	1	2	3	4	5	6	7	8	9	10

3. ⑮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 구분	
내·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 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61, 63, 65, 78 제외), 6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64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65 직무발명보상금, 71 상금 및 부상 72 광업권 등 73 지역권등 74 주택입주지체상금 75 원고료등 76 강연료등 77 종교인소득 78 사례금 79 자문료등 80 통신판매 대여소득 6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64, 68, 69, 71 ~ 77, 79, 80 제외)

⑩ 지급 연월일			⑪ 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비과세 소득	⑭ 필요 경비	⑮ 소득 금액	⑯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⑰ 소득세	⑱ 지방소득세	⑲ 농어촌특별세	⑳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⑫ 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4. ⑬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5. ⑰란부터 ⑳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① 귀속 연도	년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종교인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② 종교단체명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종교인 소득	⑩ 발생처 구분	⑪ 종교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 (연·월·일)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⑮ 비과세 소득
	주(현)		- -	. . ~ . .		
	종(전)		- -	. . ~ . .		
			- -	. . ~ . .		

소득 금액	⑯ 종교인소득(⑭)	⑰ 필요경비	⑱ 소득금액(⑯-⑰)

⑲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⑱)				구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⑳ 본인		㉜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㊶ 결정세액				
		㉑ 배우자		㉝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납부세액 ㊷ 종(전) 근무지				
		㉒ 부양가족 (명)		㉞ 산출세액						
	추가공제	㉓ 경로우대 (명)		㉟ 혼인세액공제		기납부세액 ㊸ 주(현) 근무지				
		㉔ 장애인 (명)		㊱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명)		㊹ 차감 납부할 세액				
				출산·입양자(명)						
		㉕ 부녀자		㊲ 연금계좌 세액공제						
		㉖ 한부모가족		㊳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㉗ 연금보험료공제				고향사랑기부금						
㉘ 종합소득공제 계				특례기부금						
㉙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㉚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일반기부금						
㉛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㊴ 표준세액공제						
				㊵ 외국납부세액공제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㊺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 성 방 법

1.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3. 거주지국란 및 거주지국코드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란: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5. ⑭ 지급액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⑮ 비과세소득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7. ㉜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 종교인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㊳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서식 제2쪽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9. ㊹ 차감 납부할 세액란: 납부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소액 부징수)에는 "0"으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기부금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

⑦ 코드	⑧ 기부내용	기부처: ⑨ 상호(법인명)	기부처: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	⑪ 기부자: 관계코드	⑪ 기부자: 성명	⑪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기부명세: 건수	기부금액: ⑫ 합계(⑬+⑭)	기부금액: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⑮ 기타

❸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일반)	고향사랑 기부금(특별재난지역)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		10	20	43	44	40	41	42	10,40,41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❹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 금액(⑯-⑰)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필요경비	해당 연도 공제금액: 세액~~(소득)~~공제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소멸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이월금액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특례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나.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다.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3"
   라.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코드번호 "44"
   마.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바.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사.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2"
   아.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⑧ 기부내용란: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⑨ 상호(법인명)란: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란의 최상단에 적고, ⑨ 상호(법인명)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으며,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⑪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3", 44",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0", "41"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⑮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회계공시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조에 납부한 조합비나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 ❸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란: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란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란의 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❹ 기부금 조정 명세란 작성 방법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❸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란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⑯ 기부금액란,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란, ⑱ 공제대상금액란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바.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리 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해당1 / 미해당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해당1 / 미해당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해당1 / 미해당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세대주의 배우자3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해당1 / 미해당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소			

	구분	주(현)	종(전)	종(전)	⑯-1 납세조합	합계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	⑨ 근무처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여					
	⑭ 상여					
	⑮ 인정상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⑯ 계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⑱ 국외근로 MOX					
	⑱-1 야간근로수당 OOX					
	⑱-2 보육수당 QOX					
	⑱-3 출산지원금 QOX					
	⑱-4 연구보조비 HOX					
	⑱-5					
	~					
	⑱-41 임원등 할인금액 W01					
	⑲ 수련보조수당 Y22					
	⑳ 비과세소득 계					
	⑳-1 감면소득 계					

	구분		㉗ 소득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Ⅲ. 세액명세	㉑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㉒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㉓ 주(현)근무지				
	㉔ 납부특례세액				
	㉕ 차감징수세액(㉑-㉒-㉓-㉔)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Ⅳ. 정산명세	㉑ 총급여(⑯, 외국인 단일 세율 적용 시 연간 근로소득)				
	㉒ 근로소득공제				
	㉓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	㉔ 본인			
		㉕ 배우자			
		㉖ 부양가족(명)			
	추가공제	㉗ 경로우대(명)			
		㉘ 장애인(명)			
		㉙ 부녀자			
		㉚ 한 부 모 가 족			
	종합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㉛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공제금액	
		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 공무원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 군인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 별정우체국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특별소득공제	㉝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대상금액	
				공제금액	
			㉯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공제금액	
		㉞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거주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15년~29년
					30년 이상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 밖의 대출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㉟ 계			
	㊱ 차감소득금액				
그 밖의 소득공제	㊲ 개인연금저축				
	㊳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㊴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㊵ 투자조합출자 등				
	㊶ 신용카드등 사용액				
	㊷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㊸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㊹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㊹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㊺ 그 밖의 소득공제 계				
	㊻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㊼ 종합소득 과세표준				
	㊽ 산출세액				
세액감면	㊾ 「소득세법」				
	㊿ 「조세특례제한법」((51) 제외)				
	(5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52) 조세조약				
	(53) 세액감면 계				
세액공제	(54) 근로소득				
	(55) 혼인세액공제				
	(56) 자녀	공제대상자녀 (명)			
		출산·입양자 (명)			
	연금계좌	(57)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59)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59)-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	(60)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장애인 전용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1)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2)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3)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만원 초과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20만원 초과분 일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20만원 초과분 특별재난지역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4) 계			
		(65) 표준세액공제			
	(66) 납세조합공제				
	(67) 주택차입금				
	(68) 외국납부				
	(69)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70) 세액공제 계				
	(71) 결정세액((48)-(53)-(70))				
	(80) 실효세율(%) ((71)/(21))×100				

(76) 소득·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혼인세액공제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	6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 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특수교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 계										
							기타 계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자료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문화체육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소비증가분~~ ~~2023년 전체 사용분~~	~~소비증가분~~ ~~2024년 전체 사용분~~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작 성 방 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거주지국"란 및 "거주지국코드"란: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해당1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해당1을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③-1에서 해당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습니다.
6.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⑳ 비과세소득 계"란 및 "⑳-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주(현)란]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⑯-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㊻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존속 법인 등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하여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8. "㉑ 총급여"란: "⑯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⑯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㉝~㉞)"란 및 "그 밖의 소득공제(㊲~㊺)"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10. "연금계좌(57~59-1)"란 및 "특별세액공제(60~64)"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작 성 방 법

10. "㊻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란: ㉞ 주택자금공제(㉮+㉯), 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㉙ 주택마련저축(㉮+㉯+㉰), ㊵ 투자조합출자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 ㊶ 신용카드등 사용액, ㊷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㊹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11. "㊼ 종합소득 과세표준"란: ㊱ 차감소득금액에서 ㊺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㊻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㊸ - ㊹고향사랑기부금"이 20만원 초과시, 특별재난지역 기부금(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 기부분에 한함)은 30% 세액공제합니다.

13. "㊹ 납부특례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4.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15.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㊽ 실효세율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만 표시하고 그 외는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리며, ㊺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6. "㊻ 소득・세액공제 명세"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 (소득세법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장애인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마.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사.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아. 의료비(일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 6세이하 ·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9. ㉞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0.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합니다)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문화체육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경우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문화체육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나목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라목	D01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휴직일~3개월째:월 250만원, 4개월째~6개월째:월 200만원, 7개월째~:월 160만원)도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바목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으로 한정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아목	G01	⑱-5	비과세 학자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H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및 제3호(식료・일직료・숙직료 등)	×
		H0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호 및 제8호(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⑱-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⑱-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⑱-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⑱-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⑱-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나목(연구보조비 등)	○
		H10	⑱-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다목(연구보조비 등)	○
		H14	⑱-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가목(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⑱-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나목(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⑱-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4호(취재수당)	○
		H12	⑱-7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5호(벽지수당)	○
		H13	⑱-8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6호(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⑱-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호(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H17	⑱-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8호(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I01	⑱-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카목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타목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파목	K01	⑱-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하목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M01	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만 적용)	○
		M03	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국외근로)	○
		M04	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500만원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O01	⑱-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P01	⑱-40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Q01	⑱-2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으로 지급받는 급여(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	○
		Q02	⑱-3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1회)	○
		Q03	⑱-3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2회)	○
		~~Q04~~	~~⑱-3~~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2회)~~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버목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서목	R10	⑱-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	R11	⑱-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3(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	V01		사택 제공 이익	×
		V02		주택 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	×
		V03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	×
		V04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
		V0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처목	W01	⑱-41	임원등 할인금액 비과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S01	⑱-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	U01	⑱-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88의4제6항	Y02	⑱-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⑱-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⑱-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Y22	⑲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다목(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T01	⑱-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
		T02	⑱-3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70%)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T30	⑱-3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29조의6	T40	⑱-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50%)	○
		T41	⑱-37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30%)	○
		T42	⑱-38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90%)	○
		T43	⑱-39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50%)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18조의3	T50	⑱-3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0조	T12	⑱-2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
		T13	⑱-3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
	조세조약	T20	⑱-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교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1) 퇴직연금계좌란의 퇴직연금 구분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2) 연금계좌저축의 연금저축구분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의 연금구분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 제 4호 · 제 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 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8. 세액공제금액란, 소득·세액 공제금액란 및 소득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1.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 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란 **구분코드:**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㉒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㉑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㉓ 임대인 성 명 (상 호)	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㉕ 유형	㉖ 계약 면적(㎡)	㉗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㉘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㉙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㉕ 유형란 **구분코드:**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㉘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01.0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유형란 및 ㉕ 유형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㉙ 전세보증금(원)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의 액수를 적습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1. 인적사항

징수 의무자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소득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2.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자녀 명세

⑦ 자녀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출산지원금			⑫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⑨지급받은 날	⑩ 지급받은 금액	⑪ 지급회차 [1 또는 2]	

작성방법

1.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비과세 적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됩니다.
3. 개인인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인 사업자의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본 서식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4.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합니다.
5. ⑪ 지급회차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횟수에 따라 '1' 또는 '2'로 적습니다.
6. 2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해당1 / 미해당2		
국적		국적코드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구분		국내	국외	합계
I. 근무처별 소득명세	⑨ 근무처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⑫ 감면기간		~	~	~
	⑬ 급여				
	⑭ 상여				
	⑮ 인정상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⑯ 계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⑱ 국외근로	MOX			
	⑱-1 야간근로수당	OOX			
	⑱-2 보육수당	QOX			
	⑱-3 출산지원금	QOX			
	⑱-4				
	⑱-5				
	~				
	⑱-41 임원등 할인금액	W01			
	⑲ 수련보조수당	Y22			
	⑳ 비과세소득 계				
	⑳-1 감면소득 계				

III. 세액계산	㉑ 근로소득			차감납부세액	
	㉒			㉗ 소득세	
	㉓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세액공제	㉔ 외국납부		㉘ 지방소득세	
		㉕ 납세조합 [(㉓- ㉔) × 3/100]		㉙ 농어촌특별세	
	㉖ 납부특례세액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해당 1 / 미해당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공적연금사업자3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⑨ 임원 여부 [ ]해당 [ ]미해당
	⑩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 가입일		⑪ 2011.12.31. 퇴직금
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⑫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퇴직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⑬ 근무처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퇴직급여			
	⑯ 비과세 퇴직급여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⑮-⑯)			
	⑱ 과세이연 여부	[ ]해당 [ ]미해당		

근속연수	구 분	⑲ 입사일	⑳ 기산일	㉑ 퇴사일	㉒ 지급일	㉓ 근속월수	㉔ 제외월수	㉕ 가산월수	㉖ 중복월수	㉗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정산 근속연수									

과세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㉘ 퇴직소득(⑰)	
	㉙ 근속연수공제	
	㉚ 환산급여[(㉘-㉙)× 12배/정산근속연수]	
	㉛ 환산급여별공제	
	㉜ 퇴직소득과세표준(㉚-㉛)	

퇴직소득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㉝ 환산산출세액(㉜× 세율)	
	㉞ 퇴직소득 산출세액(㉝× 정산근속연수/12배)	
	㉟ 세액공제	
	㊱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㊲ 신고대상세액(㉞-㉟-㊱)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㊳ 신고대상세액(㊲)	연금계좌 입금명세					㊵ 퇴직급여(⑰)	㊶ 이연 퇴직소득세(㊳×㊴/㊵)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㊴ 계좌입금금액		
		㊷ 합 계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부표 작성 여부
	㊸ 신고대상세액(㊲)					※ (뒤쪽) 작성방법의 13.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㊹ 이연퇴직소득세(㊶)					
	㊺ 차감원천징수세액(㊸-㊹)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성 방 법

1. 퇴직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의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만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해당 1을 선택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지위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1' 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사업자3을 체크합니다. 연금계좌 취급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5.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6. 소득자란의 ⑨ 임원 여부란에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⑨ 임원 여부란에서 해당에 체크하는 경우에는 ⑪ 2011. 12. 31. 퇴직금란에 해당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란: 해당 퇴직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경우만 적습니다.
8. 퇴직급여현황란(⑬란부터 ⑰란까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⑬ 근무처명 및 ⑭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중간지급 등란에는 현 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지급, 퇴직금의 분할지급 또는 퇴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⑮ 퇴직급여란, ⑯ 비과세퇴직급여란 및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란: 사용자에게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소득(임원의 경우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은 제외합니다)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퇴직소득을 적습니다.
   다. ⑱ 과세이연 여부란: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중간지급 등란에 적은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해당'에 체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미해당'에 체크합니다.
9. 근속연수란(⑲란부터 ㉗란까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⑲ 입사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나. ⑳ 기산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다만,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중간지급 받은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 ㉑ 퇴사일란: 퇴직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㉔ 제외월수란: 퇴직급여 산정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의 월수를 적습니다.
   마. ㉕ 가산월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 하는 월수를 적습니다.
10. 과세표준 계산란(㉘란부터 ㉜란까지) 및 퇴직소득 세액계산란(㉝란부터 ㊲란까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㉘ 퇴직소득란: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나. ㉛ 환산급여별공제란: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구분 \ 환산급여	8백만원 이하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8백만원 초과분의 60%)	4천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의 55%)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

   다. ㉝ 환산산출세액란: ㉛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라. ㉟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 값을 기재합니다.
   마. ㊱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란: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중간지급 등란에 적은 퇴직급여에 대한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2026.7.1. 이후 퇴직(「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여 지급하는 분부터는 중간지급 등란에 적은 퇴직급여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할 때 ㊲ 신고대상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부표의 ⑥, ⑮, ⑳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란(㊳란부터 ㊷란까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합니다.(거주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㊴ 계좌입금금액란: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최종란의 금액 중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입금금액으로 표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㊵ 퇴직급여란: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최종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에서 처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㊶ 이연퇴직소득세란: ㊲ 신고대상세액에 연금계좌 입금비율(㊴ 계좌입금금액 / ㊵ 퇴직급여)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12. 납부명세란(㊸란부터 ㊺란까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㊸ 신고대상세액란: 퇴직소득세액계산에서 산출된 ㊲ 신고대상세액을 적습니다.
   나. ㊹ 이연퇴직소득세란: ㊶ 이연퇴직소득세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 ㊺ 차감원천징수세액란: ㊸ 신고대상세액에서 ㊹ 이연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값을 적습니다.
13.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중간지급 등란에 적은 퇴직급여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할 때 ㊲ 신고대상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부표 작성 여부에 체크한 후 해당 이연퇴직소득이 납입된 연금계좌에 대한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소득자(또는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부표를 작성합니다.[2026. 7. 1. 이후 퇴직(「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작성 대상]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1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명세[별지 제24호서식(2) 앞쪽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중간지급 등란의 상세 내역 작성]

① 지급 회차	② 귀속연도	③ 근무처	④ 사업자 등록번호	⑤ 퇴직급여	⑥ 차감징수 세액	⑦ 과세이연 여부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합계						

2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 명세(1의 ⑦ 과세이연 여부란에서 '해당'에 체크한 경우 작성)

⑧ 지급 회차	⑨ 연금계좌 취급자	⑩ 사업자 등록번호	⑪ 계좌번호	⑫ 입금금액	⑬ 인출금액	⑭ 잔액	⑮ 원천징수 세액	⑯ 정산 후 이연세액
합계								

3 이연퇴직소득세 재계산 명세

⑰ 전체 퇴직소득 산출세액 (별지 제24호서식(2) 앞쪽 ㉞)	⑱ 전체 퇴직소득 (별지 제24호서식(2) 앞쪽 ⑰의 정산란)	⑲ 정산 전 이연퇴직소득 (이 부표 ⑭의 합계)

⑳ 재계산 이연퇴직소득세액(⑰ × ⑲ / ⑱)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⑤ "퇴직급여"란의 합계는 별지 제24호서식(2) 앞쪽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중간지급 등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⑥ 차감징수세액"란: ⑤의 각 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에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의 ㊺ 차감원천징수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급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세액을 적습니다.)
4. "⑦ 과세이연 여부"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소득세법」제1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미해당' 으로 적습니다.
5. "⑧ 지급회차"란: "① 지급회차"란에 적힌 해당 회차를 적습니다.
6. "⑫ 입금금액"란: 지급회차별로 「소득세법」제146조제2항에 각 호에 따라 연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적습니다.
7. "⑬ 인출금액"란부터 "⑮ 원천징수세액"란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8. "⑮ 원천징수세액"란: "⑬ 인출금액"란의 금액을 전액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8. "⑯ 정산 후 이연세액"란: "⑳재계산 이연퇴직소득세액"란의 금액에 각 연금계좌별 "⑭ 잔액"란의 합계액 대비 비율로 안분한 세액을 적습니다.
9.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5항에 따라 이 부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앞쪽)

관리번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 승계 여부	[ ]여 [ ]부
의료비연금계좌	[ ]여 [ ]부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계좌 명세	⑨ 계좌번호		⑩ 연금수령개시신청일		⑪ 연금계좌평가액
	⑫ 연금수령 기산연도	⑬ 연금계좌 가입시기	⑭ 연금 수령연차	⑮ 연금수령한도 ([⑪/(11-⑭)]×120%)	⑯ 연금 실제 수령연차
		2013.3.1. 전[ ] 이후[ ]			

소득명세							
⑰ 귀속연월				⑱ 퇴직분			
인출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㉓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사망 [ ]해외이주 [ ]요양 [ ]재난피해 [ ]개인회생·파산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세액이연분	전환분			
연금수령	⑲일반연금						
	⑳의료비 인출						
	㉑부득이한 사유					㉔ 연금외 수령 사유	[ ]계좌해지 [ ]일부인출 [ ]한도초과 [ ]주택차액등 반환
㉒연금외수령							

세액명세	구분			지급액	세액
	소득	원천			
	㉕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㉖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㉗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㉘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㉙ 퇴직분				
기타소득	㉚ 연금외수령		15%		

납부명세	구 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계
	㉛ 연금소득	종합과세				
		무조건분리과세				
	㉜ 퇴직소득					
	㉝ 기타소득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❷ 퇴직	❸ 기납부세액 명세	❹ 세액이연 퇴직소득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배우자 승계 여부란은 승계를 했으면 '여', 승계하지 않았으면 '부'에 "√"표를 하고, 의료비연금계좌란은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되었으면 '여', 지정되지 않았으면 '부'에 "√"표를 합니다.
3.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4. 계좌명세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⑩ 연금수령개시신청일란: 연금수령을 개시하기로 사전약정하였고 별도로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전약정한 날을 적습니다.
   나. ⑪ 연금계좌평가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수령개시신청한 연금계좌의 경우 ⑩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을 적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적습니다.
   다. ⑫ 연금수령기산연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라. ⑬ 연금계좌 가입시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연금계좌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시기가 2013년 1월 1일 전인 경우 2013.1.1. 전[ ] 란에, 2013년 1월 1일 이후이고 2013년 3월 1일 전인 경우 2013. 3. 1. 전[ ] 란에, 2013년 3월 1일 이후인 경우 이후[ ]란에 "√"표를 합니다.
   마. ⑭ 연금 수령연차란: 해당 과세연도에서 연금수령기산연도를 차감한 연차에 1(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6)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바. ⑮ 연금수령한도란: ⑪ 연금계좌평가액/(11-⑭ 연금수령연차)]×120% 을 적습니다.(⑭ 연금수령연차가 11 이상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사. ⑯ 연금 실제 수령연차란 : ⑭ 연금 수령연차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적습니다.
5. 소득명세 중 ⑱ 퇴직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되는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의 퇴직소득을 기재합니다.
6. 소득명세 중 인출분의 작성방법은 수령 형태, 소득 원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란에 기재합니다.
   가. 수령 형태의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출액은 ㉑ 부득이한사유 란에 적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출액은 ⑳ 의료비인출 란에 적으며,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과 의료비인출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출액은 ⑲ 일반연금란에 적으며, 그 외의 인출액은 ㉒ 연금외수령란에 적습니다.
   나. 소득원천의 구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소득원천에 따라 해당 란에 기재하며, 이연퇴직소득 중 전환분은 「소득세법」 제146조의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세액명세의 세율 및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각 세액란은 각 세율과 해당하는 지급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㉕ 과세제외금액란: 소득명세의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한 과세제외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연금소득의 ㉖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란: 세율 란은 부표❸의 ⑤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에 70%(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60%,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50%)를 곱한 수를 % 단위로 적고 지급액 란에 소득명세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 중 연금수령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이연분의 입금으로 인해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적용된 각 세율을 지급된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습니다.
   다. 연금소득의 ㉗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란: 가입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에 해당하는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라. 퇴직소득의 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란: 세율 란은 부표❸의 ⑤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 단위로 적고 지급액 란에 소득명세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의 연금외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이연분의 입금으로 인해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적용된 각 세율을 지급된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습니다.
   마. 퇴직소득의 ㉙ 퇴직분란 :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⑱ 퇴직분의 금액을 적고 세액 란은 부표❷의 ㉕차감원천징수세액 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소득: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8. 납부 명세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가. 지급액 란: ㉛ 연금소득의 종합과세는 소득명세의 연금수령의 일반연금이면서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연금소득의 무조건 분리과세 란은 세액명세의 연금소득 지급액 합계에서 종합과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으며, ㉜ 퇴직소득, ㉝ 기타소득은 세액명세의 소득별 지급액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나. 소득세 란은 세액 명세의 소득별 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고, 지방세 란은 해당하는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으며, 세액계 란은 소득세와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9. 부표 ❷,❸은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개정 2026. 3. 00.>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

연금계좌 취급자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소재지(주소)	
연금계좌 가입자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계좌유형		⑧ 계좌번호	

이연퇴직소득 입금 및 인출 내역

작성 기준일	년 월 일	작성 담당자 (연락처)	( )

입금·인출 내역

⑨ 입금 회차	⑩ 입금 일	⑪ 근무처 상호	⑫ 근무처 사업자 번호	⑬ 소득이연 퇴직소득 (전환분) 여부	이연퇴직소득 ⑭ 입금 금액	⑮ 입금 금액에 대한 세액	⑯ 전환 금액	⑰ 전환 금액에 대한 세액	⑱ 인출 일	⑲ 인출 금액	⑳ 인출 금액에 대한 세액	㉑ 잔액	㉒ 원천징수 세액
합계													

위와 같이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금계좌취급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명세표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가목에 따른 금액의 입금·인출 내역을 작성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2. ⑦ 계좌유형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⑪ 근무처상호란: 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급여를 지급한 근무처를 적습니다.
4. ⑬ 소득이연퇴직소득(전환분)여부란: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소득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O"표시합니다.
5. ⑭ 입금금액란: 연금계좌의 이전으로 이체받기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최초 입금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6. ⑮입금금액에 대한 세액란: 소득이연퇴직소득이나 입금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7. ⑯ 전환금액란: 「소득세법」 제146조의2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에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지급받아 즉시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적습니다. 세액이연퇴직소득의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8. ⑰ 전환금액에 대한 세액란: 2014년 12월 31일에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볼 때의 세액을 적습니다.
9. ⑱ 인출일란: 입금회차 1건에 인출건이 다수인 경우 인출건별로 인출일, 인출금액, 인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10. ⑳ 인출금액에 대한 세액란: 인출 당시 인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상 세액을 작성합니다.
11. ㉑ 잔액란: 작성기준일 현재 이연퇴직소득 잔액을 작성합니다.
12. ㉒ 원천징수세액란: ⑱인출금액을 전액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13. 연금계좌 가입자는 이 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의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제공해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취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계좌 가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4. 본 명세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서식] <개정 2026. 3. 0.>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비거주자용)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성명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② 주소
(거주지국 주소) (국내 거소)

③ 납세자번호	④ 생년월일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⑦ 전화번호
(거주지 전화) (국내 전화)

⑧ 국내체재일
[ ]없음 (최근 1년간) _____일 (최근 2년간) _____일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⑨ 대한민국과 _____간의 조세조약 제___조 제___항 제___호 ____소득 세율 ___%
제___조 제___항 제___호 ____소득 세율 ___%
제___조 제___항 제___호 ____소득 세율 ___%

3. 비거주자 판정기준

항 목	예	아니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국내체재일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음

대리인	⑩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⑪ 성명 또는 법인명	⑫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⑬ 주소 또는 소재지		

※ 귀 금융기관이 본인의 법무부 출입국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고 객 명 (서명 또는 인)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뒤쪽의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뒤쪽)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등을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또는 소재지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까지 그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거주지국, 주소, 국내거소,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3. ②주소란의 (거주지국 주소)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국내 거소)는 한글로 적습니다.

4. ③납세자번호란에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5.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6. ⑦전화번호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⑧국내체재일란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적되,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없음' 란에 √로 표기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8. ⑨란에는 적용받으려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및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9. '3. 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 ~ ㉵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0. 국내체류기간 계산에 참고하기 위하여 받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의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11. ⑩ ~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 <개정 2026. 3. 0.>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봄) 이상에 해당

[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1-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일반 현황

①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설립연월일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등록·승인된 국가	⑧ 국가코드	⑨ 등록·승인의 근거법령	⑩ 등록·승인한 금융감독기관

⑪ 유형
[ ]법인 [ ]신탁 [ ]파트너십 [ ]기타( )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기준일: 년 월 일]

⑫ 국가 등	총투자 금액·비율		⑮ 실질귀속자 수	⑯ 적용세율(%)		
	⑬ 금액(단위:)	⑭ 비율(%)		___소득	___소득	___소득
⑰ 합계		100%				

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 또는 제207조의8제3항 각 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 또는 제138조의7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금융감독기관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자설명서 2.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⑱ 명칭	⑲ 대표자 성명	⑳ 설립연월일	㉑ 투자등록증 번호 등
㉒ 전화번호	㉓ 주소		
㉔ 설립지국		㉕ 국가코드	

㉖ 유형
[ ]법인 [ ]신탁 [ ]파트너십 [ ]기타( )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5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207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4·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38조의7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실질귀속자 명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대리인	㉗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㉘ 성명 또는 법인명	㉙ 사업자(주민)등록번호
	㉚ 주소 또는 소재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이 신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고서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질귀속자들의 구성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함께 적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요건(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여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 국외투자기구의 명칭, 주소, 거주지국, 유형, 전화번호, 적용세율 등이 변경된 경우
   나. 원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 신고했던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 수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다. 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3년이 지난 경우
2. ①, ⑱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 ⑲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⑳ 설립연월일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설립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5. ④, ㉑ 투자등록증 번호란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투자등록증 번호(IRC No.)를 적되,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6. ⑤, ㉒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⑥, ㉓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8. ⑦ 등록·승인된 국가란과 ㉔ 설립지국란의 국가명 또는 ⑧, ㉕ 국가코드란의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 등록·승인의 근거법령란에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에 공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10. ⑩ 등록·승인한 금융감독기관란에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공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또는 승인을 관할하는 금융감독기관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11. ⑪, ㉖ 유형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법인인 경우라도 거주지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파트너십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에 '√' 표시를 합니다.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에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12.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란에는 실질귀속자들을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여 적습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 당시 국가별 분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의 전반기 말일 또는 신고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의 국가별 분류가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⑫ 국가 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ZZ'를 적습니다.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실질귀속자들은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지 않고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국외투자기구 명칭을 적고 실질귀속자 수는 1로 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 거주지 국가의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14. ⑯ 적용세율란에는 실질귀속자들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한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0(면제)')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의 ⑩ 징수세율의 합계(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투자기구 신고서의 ⑯ 적용세율란에 적힌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15. ⑰ 합계란에는 ⑬ 총투자금액, ⑮ 실질귀속자 수를 각각 합산하여 적되, ⑯ 적용세율의 합계는 소득의 종류별로 각 국가별 총투자비율에 국가별 적용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영(0)]을 곱한 비율(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비율에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을 포함합니다)을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⑭ 총투자비율의 합계는 항상 100%이어야 합니다.
16. ⑭ 국가별 총투자비율 또는 ⑯ 적용세율의 합계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예: XX.XXXX%)
17. ㉗~㉚란에는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까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실질귀속자 명세 (____소득)

(앞쪽)

(단위: %)

① 구분	② 번호	③ 성명 또는 명칭	④ 납세자번호	⑤ 주소	⑥ 거주지국	⑦ 생년월일	⑧ 적용세율	⑨ 지분율	⑩ 징수세율 (⑧ × ⑨)
							⑪ 합계	100%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별로 작성하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질귀속자들의 구성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함께 적으며,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① 구분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V'로 표기하고, 실질귀속자인 경우 'BO'로 표기합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중에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먼저 적고, 국외투자기구를 나중에 적습니다.

3. ② 번호란에는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③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투자자의 성명 또는 국외투자기구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국외투자기구의 상호를 적을 때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5. ④ 납세자번호란에는 투자자의 납세자번호를 적되,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고 법인인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6. ⑤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7. ⑥ 거주지국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명에 'ZZ'를 적습니다.

8. ⑦ 생년월일란에는 실질귀속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⑧ 적용세율란에는 해당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가능한 제한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0(면제)']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 중 ⑩ 징수세율의 합계란에 적힌 세율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⑯ 적용세율란에 적힌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⑨ 지분율란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각각의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투자 지분율을 적습니다. 지분율의 합계는 항상 100%이어야 합니다.

11. ⑩ 징수세율란에는 해당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별로 ⑧ 적용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영(0)]에 ⑨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습니다.

12. ⑪ 합계란에는 실질귀속자 및 국외투자기구별로 적힌 징수세율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⑨ 지분율, ⑩ 징수세율, 또는 ⑪ 징수세율의 합계 등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퍼센트로 적습니다.(예: XX .XXXX%)

13. 이 명세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 다음 날 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까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5서식] <개정 2026. 3. 0.>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실질귀속자 [ ] 소득지급자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생년월일	⑨ 전화번호
	⑩ 주소	
실질 귀속자	⑪ 성 명	⑫ 납세자번호
	⑬ 생년월일	⑭ 국내 전화번호
	⑮ 거주지국	⑯ 거주지국코드
	⑰ 주소	
소득 지급자	⑱ 법인명(성명)	⑲ 납세자번호
	⑳ 관할 세무서	㉑ 전화번호
	㉒ 소재지	
청구내용	㉓ 청구세액(원)	㉔ 소득종류
	㉕ 청구사유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9서식] <신설>

국채등 [ ] 이자소득 [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비거주자용)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청구인	① 명칭(성명)	② 납세자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 소득자(투자자) [ ] 소득지급자 [ ]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재지(주소)	
	⑨ 생년월일	⑩전화번호
소득자 (투자자)	⑪ 성명	
	⑫ 납세자번호	⑬ 생년월일
	⑭ 주소	
	⑮ 거주지국	⑯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⑱ 법인명(성명)	⑲ 납세자번호
	⑳ 관할 세무서	㉑ 전화번호
	㉒ 소재지	
청구내용	㉓ 청구세액(원)	㉔ 소득종류
	㉕ 청구사유	

「소득세법」제119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 2. 비거주자(소득세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 포함)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여권 사본 등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소득세법」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가 상 자 산 거 래 명 세 서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분기별)

관리번호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대상 기간	년 분기

②가상자산사업자명 (제출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본점소재지)		⑤금융 기관명		⑥금융기관 사업자등 록번호		⑦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가상 자산사업자등록번호	

가상자산 거래내역

번호	⑧이용자						⑨가상 자산 종류		⑩거래 전 잔고	⑪거래 일시	⑫거래 유형	⑬TXID	⑭거래 수량	⑮단가	⑯양도 등		⑰취득 등		⑱거래상대방				⑲거래 후 잔고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계정관리코드	계좌번호	가상자산 지갑주소	코드	심볼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가액	수수료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상자산지갑주소		
																					소재지	주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등이 발생한 분기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분기는 1부터 4까지의 숫자 가운데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예시: 2027년 1분기).
2.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소득세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금융기관명, ⑥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을 위해 발급받은 실명계좌의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⑦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가 가능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결정을 위해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예: 기축가상자산 가격결정을 위해 업비트를 선택하는 경우 두나무(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5. ⑧이용자 : 가상자산 매매, 교환, 대여, 이전(상속이전), 인입(상속인입), 기타취득한 자의 인적사항(내국인일 경우 '1', 외국인일 경우 '2'), 계정관리코드(예시: 동일인의 계정이 2개인 경우 '001', '002'), 계좌번호,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적습니다.
   (참고: 내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국인으로 작성합니다.)
6. ⑨가상자산 종류 : 국세청홈택스-"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하여 해당 가상자산의 코드와 심볼을 적습니다(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00145', 'BTC', 조회 코드 목록에 없는 경우 '999999', 해당 심볼 작성).
7. ⑩거래전잔고: 매매, 교환, 대여, 이전(상속이전), 인입(상속인입) 및 기타취득의 거래가 발생하기 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8. ⑪거래일시 : 거래 발생 연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시(24시간 단위 2자리), 분(2자리), 초(2자리) 총 14자리로 적습니다(예시: 2027년 3월 1일 오후 1시 59분 59초 → 20270301135959).
9. ⑫거래유형 : 가상자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 가상자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 교환거래로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교환양도'**, 교환거래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교환취득'**, 가상자산 대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여**', 상속이 아닌 사유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상속이 아닌 사유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부터 가상자산이 인입되는 경우 **'인입'**, 상속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 이전'**, 상속으로 인입되는 경우 **'상속 인입'**, 기타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기타취득'**으로 구분하며,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거래유형	매도	매수	교환양도	교환취득	대여	이전	인입	상속 이전	상속 인입	기타취득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99

※ **대여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⑫거래유형을 '대여'로 하여 작성하며 ⑨가상자산 종류·⑬TXID·⑭거래수량·⑮단가는 공란 처리함

예) 대여 대가로 금전 30 수령, 수령 시 수수료 1 발생한 경우	⑨가상자산 종류		⑩거래전 잔고	⑪거래 일시	⑫거래 유형	⑬TXID	⑭거래 수량	⑮단가	⑯양도 등		⑰취득 등	
	코드	심볼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가액	수수료
	-	-	10	20270301135959	05	-	-	-	30	1		

※ **대여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경우** ⑫거래유형을 '대여', '기타취득'으로 하여 각각 작성하되 ⑨가상자산 종류, ⑬TXID, ⑭거래수량, ⑮단가는 각각 동일함

예) 대여 대가로 가상자산 3개 수령 (수령 시 시가는 단위당 10), 수령 시 수수료 1 발생한 경우	⑨가상자산 종류		⑩거래전 잔고	⑪거래 일시	⑫거래 유형	⑬TXID	⑭거래 수량	⑮단가	⑯양도 등		⑰취득 등		⑲거래 후 잔고
	코드	심볼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가액	수수료	
	000145	BTC	10	20270301135959	05	Ox96864df	3	10	30	1			10
	000145	BTC	10	20270301135959	99	Ox96864df	3	10			30	공란	13

10. ⑬TXID : 거래유형이 대여, 이전(상속이전), 인입(상속인입), 기타취득의 경우 적습니다(트랜잭션ID, 거래 ID, TX Hash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상에서 체결된 거래의 고유식별기호를 기재).
11. ⑭거래수량 : 거래유형별로 거래된 가상자산의 수량을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

작 성 방 법 (계 속)

12. ⑯양도 등, ⑰취득 등, ⑱거래상대방 란의 거래유형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드	거래유형	거래유형 예시	⑯양도 등	⑰취득 등	⑱거래상대방
01	매도	가상자산 매도 (가상자산A를 매도하고 원화 수령)	가상자산A의 매도가액과 매도를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공란	공란
02	매수	가상자산 매수 (원화를 지급하고 가상자산A를 매수]	공란	가상자산A의 취득가액과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공란
03	교환양도	가상자산 교환 (가상자산A를 가상자산B와 교환)	가상자산A의 교환양도가액과 교환양도를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공란	공란
04	교환취득	가상자산 교환 (가상자산A를 가상자산B와 교환)	공란	가상자산B의 교환취득가액과 교환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불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원화매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도"거래로 별도 작성합니다	공란
05	대여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대가 수령 (대여 예시: 예치서비스 등)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과 발생 수수료를 각각 거래가액・수수료란에 적고, 가상자산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시점의 그 가상자산의 시가와 발생 수수료를 각각 거래가액・수수료란에 적습니다.	공란	대여소득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06 (08)	이전 (상속이전)	다른 가상자산주소(지갑주소)로 이전 ※ 거래소 내 계정간 이전 포함	공란 ※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불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원화매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도"거래로 별도 작성합니다	공란	가상자산 수취인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 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07 (09)	인입 (상속인입)	다른 가상자산주소(지갑주소)로부터 인입 ※ 거래소 내 계정간 인입 포함	공란	공란	가상자산 송신인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 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99	기타취득	기타 가상자산 취득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대여에 대한 대가 수령 등)	공란	가상자산 취득가액과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 대여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 수령 시 수령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13. ⑯양도 등 : 거래유형이 매도, 교환양도, 대여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14. ⑰취득 등 : 거래유형이 매수, 교환취득, 기타취득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15. ⑱거래상대방 :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대여, 이전(상속이전), 인입(상속인입), 기타취득의 경우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참고: 거래 시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거래소가 검증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가 입력한 대로 작성하고, 이용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거래소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란으로 작성)

16. ⑲거래후잔고: 매매, 교환, 대여, 이전(상속이전), 인입(상속인입) 및 기타취득의 거래가 발생한 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참고: 대여 거래로 가상자산 취득하여 거래유형 '대여'로 작성한 건은 실제 가상자산 수량 차감이 아니므로 거래후잔고는 거래전잔고와 동일하고,
대여 거래로 가상자산 취득하여 거래유형 '기타취득'으로 작성한 건은 실제 가상자산 수량 증가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거래후잔고 작성)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 <개정 2026. 3. 00.>

(앞 쪽)

가 상 자 산 거 래 집 계 표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연간)

관리번호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대상연도	년

② 가상자산사업자명(제출의무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본점소재지)		⑤ 금융기관명		⑥ 금융기관 사업자 등록번호		⑦ 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등록번호	

가상자산 거래내역

번호	⑧ 이용자			⑩ 거래내용																	⑰ 연간 변동내역							
	성명	⑨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⑪ 가상자산 종류		⑫ 양도 등 거래(매도, 교환양도)			⑬ 취득 등 거래(매수, 교환취득, 기타취득)			⑭ 이전 거래			⑮ 인입 거래			⑯ 대여 거래			⑱ 기초재고			⑲ 증가		⑳ 감소	㉑ 기말재고	
				코드	심볼	수량	가액	수수료	수량	가액	수수료	상속	상속외	합계	상속	상속외	합계	수량	가액	수수료	수량	단위당 취득가액	수정여부(단위당 취득가액)	수량	단위당 취득가액	수량	수량	단위당 취득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집계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가 발생한 연도를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예시: 2027년)
2.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소득세법」 제164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금융기관명, ⑥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을 위해 발급받은 실명계좌의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⑦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가 가능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결정을 위해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예: 기축가상자산 가격결정을 위해 업비트를 선택하는 경우 두나무(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5. ⑧이용자 : 대상연도 중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한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⑨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1"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2"를 적습니다.(참고: 내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국인으로 적습니다.)
7. ⑩거래내용 : 이용자별, 가상자산 종류별로 연간 '양도 등', '취득 등', '이전', '인입', '대여' 거래내용의 합계를 적습니다.
8. ⑪가상자산 종류 : 국세청홈택스-"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하여 해당 가상자산의 코드와 심볼을 적습니다(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00145', 'BTC', 조회 코드 목록에 없는 경우 '999999', 해당 심볼 작성).
9. ⑫양도 등 거래 : 이용자별, 가상자산 종류별로 연간 양도 등 거래로 양도한 가상자산의 수량, 가액, 수수료를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매도·교환양도, 이전 거래 시 가상자산으로 수수료 지급 등 가상자산 보유수량이 감소하는 거래를 포함하되 대여 거래로 가상자산을 받은 거래는 ⑫양도 등 거래에 작성하지 않고 ⑯대여 거래에 작성)

   ※ 수량은 최소 거래단위까지 작성[예) 비트코인 1BTC → 1.00000000], 가액 및 수수료는 원단위(소수점 이하 절사)로 작성. 이하 동일
10. ⑬취득 등 거래 : 이용자별, 가상자산 종류별로 연간 취득 등(매수·교환취득·기타취득(대여 대가로 가상자산 취득한 경우 등)) 거래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수량, 가액과 수수료를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11. ⑭이전 거래 : 다른 가상자산주소(다른 거래소, 개인지갑, 해외 거래소 등)로 이전(거래소 내 계정간 이전 포함)된 가상자산의 수량을 상속, 상속 외, 합계로 구분하고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12. ⑮인입 거래 : 다른 가상자산주소(다른 거래소, 개인지갑, 해외 거래소 등)로부터 인입(거래소 내 계정간 인입 포함)된 가상자산의 수량을 상속, 상속 외, 합계로 구분하고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13. ⑯대여 거래 : 가상자산 대여 거래로 받은 가상자산의 수량, 가액(가상자산을 지급받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대여의 대가로 받은 금전을 포함)과 수수료를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14. ⑰연간 변동내역 : 대상연도 1년간 이용자별, 가상자산 종류별 증감과 기초·기말재고의 총평균법에 따른 단위당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연간 수량 변동내역 : ⑱기초재고 + ⑲증가 - ⑳감소 = ㉑기말재고]
15. ⑱기초재고 : 대상연도의 기초(1월 1일 0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과 총평균법에 따른 단위당 취득가액, 이용자의 단위당 취득가액 수정여부(Y/N)를 적습니다. 단,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최초로 시행되는 과세연도(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단위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
16. ⑲증가 : 수량은 ⑬ 취득 등 거래 수량과 ⑮ 인입 거래 수량의 합계 수량을 기재하고, 단위당 취득가액은 ⑬ 취득 등 거래의 가액을 수량(=⑬ 취득 등 거래 수량+⑮ 인입 거래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작성예) ⑬ 취득 등 거래의 수량과 가액이 각각 10개, 150원이고, ⑮ 인입 거래 수량이 5개인 경우: ⑲ 증가의 수량 = 15개(=10개+ 인입 5개), 단위당 취득가액=10원(=150원/15개)
17. ⑳감소 : ⑫ 양도 등 거래의 수량과 ⑭이전 수량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18. ㉑기말재고 : 대상연도의 기말(12월 31일 24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과 연간 총평균법에 따른 단위당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작성예) ⑱ 기초재고 : 수량 10개, 단위당 가액 5원, ⑲ 증가 : 수량 15개, 단위당 취득가액 10원, ⑳ 감소 : 수량 5개 인 경우,
   ㉑ 기말재고 : (수량) 기초 10 + 증가 15 - 감소 5 = 20.00000000, (단위당 가액) [기초 50원(=10개×5원) + 증가 150원(=15개×10원)] ÷ 25개(기초 10 + 증가 15) = 8원/1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개정 2026. 3. 00.> (10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I.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공제		경로우대	혼인세액공제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 시술비	6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건보료 소원특례자	실손 의료 보험금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계									
								기타계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자료구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일반	장애인 특수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문화체육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소비증가분 2023년 전년 지출분	소비증가분 2024년 전년 지출분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 소득금액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부녀자 공제"란: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
해당코드	1	2	3

6.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Ⅲ.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10년 ~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Ⅳ.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24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5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6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②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④ 문화체육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⑦ 소비증가분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증가금액			
		계(①+②+③+④+⑤+⑥+⑦)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Ⅴ.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	외국인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시작일		종료일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구분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Ⅴ.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공제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출액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15%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분	기부금액			15%, 25%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			40%	
					20만원 초과분 일반	기부금액			15%	
					20만원 초과분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액			30%	
				특례기부금		기부금액			15% ·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제외)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15% 또는 17%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2. 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 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등이 있는 경우 자녀란에 "○"표시를 합니다.
   - 혼인세액공제는 본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적용대상인 경우 혼인세액공제란에 "○"표시를 합니다.
   -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주택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되,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분을 별도로 적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개인연금저축 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600만원[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제	구 분 / 공제율 / 한 도 액 2024년 ~ 2026년 출자분·투자분 / 10%(100%,70%,30%)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의 50%.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00만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⑦에 해당하는 금액 ※ 문화체육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③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습니다)사용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15%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1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 40% ~~⑦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4. 공제한도: 총급여 기준(7천만원)과 부양자녀*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도 적용합니다. * 부양자녀: 거주자의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500만원 이하의 총급여만 있을 것 ②나이가 20세 이하(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일 것 ③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공 제 한 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부양자녀 없음	300만원	250만원
	부양자녀 1명	350만원	275만원
	부양자녀 2명 이상	400만원	300만원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300만원	200만원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연 1,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세액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연금계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해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합니다)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정합니다) 및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합니다)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사.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아.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이전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교육비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 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9세 미만(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직계비속등을 위해 지출한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합니다. 3.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한도액: 연간 2천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중 10만원 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① 특례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일반기부금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21년 및 2022년에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유 의 사 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그 밖에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혼인세액공제		혼인관계증명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마.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유 의 사 항

1.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 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 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1) 퇴직연금계좌의 "퇴직연금 구분"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2)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저축 구분"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 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3.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 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8. 소득공제금액란, 세액공제금액란 및 소득·세액 공제금액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 ]여, [ ]부]

1.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명 (상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란: **구분코드를 기재**(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1.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㉒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㉑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㉓ 임대인 성명 (상호)	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㉕ 유형	㉖ 계약 면적(㎡)	㉗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㉘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㉙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㉕ 유형란: **구분코드를 기재**(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7 기타: 8)
※ ㉘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1.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유형란 및 ㉕ 유형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㉙ 전세보증금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전세보증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1. 인적사항

징수 의무자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소득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2.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자녀 명세

⑦ 자녀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출산지원금			⑫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⑨ 지급받은 날	⑩ 지급받은 금액	⑪ 지급회차 [1 또는 2]	

작성방법

1.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비과세 적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됩니다.
3. 개인인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인 사업자의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본 서식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4.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합니다.
5. ⑪ 지급회차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횟수에 따라 '1' 또는 '2'로 적습니다.
6. 2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2018년 1월 1일 이후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는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고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즉시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I.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혼인세액공제	출산·입양	자료구분	기부금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
해당 코드	1	2	3

6.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Ⅲ. 소득공제	~~기부금 (이월분)~~	~~특례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제외)~~	~~기부금이월액~~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	2024년 출자·투자분 /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24년 출자·투자분 / 조합1				
		2024년 출자·투자분 / 조합2				
		2025년 출자·투자분 /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25년 출자·투자분 / 조합1				
		2025년 출자·투자분 / 조합2				
		2026년 출자·투자분 /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26년 출자·투자분 / 조합1				
		2026년 출자·투자분 / 조합2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Ⅳ.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공제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계좌 계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분	기부금액				15, 2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				40%	
				20만원 초과분 / 일반	기부금액				15%	
				20만원 초과분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액				30%	
			특례기부금		기부금액				15% 또는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제외)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 종교단체명 등			
					종사기간		직책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5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종(전) 근무지 명세	종(전)종교단체명		종(전) 종교인소득 총액		종(전)근무지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종(전) 결정세액		
2. 연금·저축 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기부금명세서 ( ), ②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 의 사 항

1.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전)근무지의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세액"란은 종교관련 종사자 본인이 적지 아니하고 빈칸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혼인세액공제는 본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적용대상인 경우 혼인세액공제란에 "○"표시를 합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5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제	구 분: 2024년 ~ 2026년 출자·투자분 공제율: 10%(100%,70%,30%) 한 도 액: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5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작성방법

연금계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5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한도액: 연간 2천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① 특례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일반기부금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21년 및 2022년에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하고, 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유 의 사 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종교관련종사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202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혼인세액공제	혼인관계증명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유 의 사 항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2. 연금계좌 소득 ·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계약기간" 란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개월 수 계산 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합니다).
5. 공제금액란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개정 2026. 3. 00.>

비과세 사업소득(농어가부업·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

(앞쪽)

성명		생년월일	

농어가부업

① 구분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수입금액 (상단 : 비과세금액)	④ 소득금액 (상단 : 비과세금액)	⑤ 업 종
⑥ 축산		(　　)	(　　)	
⑦ 고공품제조		(　　)	(　　)	
⑧ 면세분기타		(　　)	(　　)	
⑨ 민박		(　　)	(　　)	
⑩ 음식물판매		(　　)	(　　)	
⑪ 특산물제조		(　　)	(　　)	
⑫ 전통차제조		(　　)	(　　)	
⑬ 과세분기타		(　　)	(　　)	
농어가부업 합 계	⑭ 합　　계			
	⑮ 비과세금액		30,000,000	
	⑯ 과세대상금액 (⑭-⑮)			

어로어업·양식어업

⑰ 구분	⑱ 사업자등록번호	⑲ 수입금액 (상단 : 비과세금액)	⑳ 소득금액 (상단 : 비과세금액)	㉑ 업종
㉒ 어로어업		(　　)	(　　)	
㉓ 양식어업		(　　)	(　　)	
어로어업·양식어업 합 계	㉔ 합　　계			
	㉕ 비과세금액		50,000,000	
	㉖ 과세대상금액 (㉔-㉕)			

* 소득금액은 위 순서대로 합산하며, 소득금액이 3천만원(어로어업·양식어업은 5천만원)이 되는 부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분과 소득세 과세분을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예) · 민박의 소득금액 : 10,000,000원,
· 특산물제조 소득금액이 22,000,000원(수입금액 220,000,000원)인 경우
– "⑫특산물제조"란의 소득금액은 22,000,000원이므로 민박 소득금액 10,000,000원 및 특산물제조 중 20,000,000원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며, 나머지 2,000,000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220,000,000 × (2,000,000/22,000,000)=20,000,000원이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해당연도 ⑥ 축산란부터 ⑬ 과세분기타란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 있는 자와 ㉒ 어로어업란 또는 ㉓ 양식어업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이 있는 자만 작성합니다.
2. ⑥ "축산"란, "⑦ 고공품제조"란, "⑧ 면세분 기타"란, "㉒ 어로어업"란 및 "㉓ 양식어업"은 농어가부업·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을 적습니다.
3. "⑥ 축산"란: 이 서식 부표(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를 먼저 작성한 후 아래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적지 않으며, 그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만 적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50마리	토끼	5,000마리	1. 가축의 규모는 성축(成畜)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育成牛)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2. 사육두수는 가축별로 매월 말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 연간 평균 두수로 합니다.
소	50마리	닭	15,000마리	
돼지	700마리	오리	15,000마리	
산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양	300마리	개	500마리	

4. ⑨ "민박"란, ⑩ "음식물판매"란, ⑪ "특산물제조"란, ⑫ "전통차제조"란 및 ⑬ "과세분 기타"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을 적습니다.
5. "⑮ 비과세금액"란의 "③ 수입금액"은 비과세 소득금액인 3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적고, "㉕ 비과세금액"란의 "⑲ 수입금액"란에는 비과세 소득금액인 5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⑯ 과세대상금액"란의 "③ 수입금액"란 및 "④ 소득금액"란에는 "⑭ 합계액"란의 금액에서 "⑮ 비과세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㉖ 과세대상금액"란의 "⑲ 수입금액"란 및 "⑳ 소득금액"란에는 "㉔ 합계액"란의 금액에서 "㉕ 비과세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만을 적습니다.
9. "③ 수입금액"란, "⑲ 수입금액"란, "④ 소득금액"란 및 "⑳ 소득금액"란의 상단 "(　)"에는 각각 농어가부업·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금액을 적고, 하단에는 해당 란의 전체 수입금액과 전체 소득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 "⑥ 축산"란부터 "⑬ 전통차제조"란까지, "㉒ 어로어업"란 및 "㉓ 양식어업"란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장자: 기장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을 적습니다.

나. 기준경비율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축산업 사업소득(농어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가축종류( )	가축종류( )	가축종류( )	계
월평균 사육두수의 계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기준초과 사육두수					
총수입금액					
기준 초과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작 성 방 법

1.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축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비고	가축별	규모
젖 소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	토 끼	5,000마리
소	50마리		닭	15,000마리
돼 지	700마리		오 리	15,000마리
산 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 양	300마리		개	500마리

2.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영위하는 축산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또는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6)]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작 성 방 법

1. 제3쪽❶ 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
2. 제3쪽❸ 세무대리인란: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신고서작성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기재합니다(⑯대리구분란은 1 ~ 4 중 하나만 선택).
3. 제5쪽 ~ 제11쪽❺ ~ ❽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와 ❿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⓫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15쪽 ⓫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제19쪽 ⓬ 세액감면명세서, ⓭ 세액공제명세서, ⓮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제21쪽 ⓯ 가산세명세서와 ⓰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제3쪽 ❹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⓳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9쪽의 ⓴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9. 제3쪽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10. 각 서식에서 적을 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1.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2.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 수 증(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 3. 합계잔액시산표 ( ) 4. 조정계산서 ( ) 5. 소득공제신고서 (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 7.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감면신청서 ( )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 9. 그 밖의 첨부서류 ( )			접 수 자 접수일(인)

210㎜×297㎜(백상지 80g/㎡)

❶~❹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⑨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하며,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⑭, ⑫, ⑪, ⑳, ㉛, ㉜, ㊵, ㉟**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5. ❸ 세무대리인란: 해당되는 대리구분에 ✔표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①기장 ②조정 ③신고 ④성실확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⑲ 종합소득금액란: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7. ⑳ 소득공제란: 제15쪽 ⓫ 소득공제명세서의 ㉒ 소득공제 합계에서 ㉓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㉒ 세율란 및 ㉓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 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제27쪽 ⓲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제29쪽 ⓳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9. ㉔ 세액감면란 및 ㉕ 세액공제란: 제19쪽 ⓬ 세액감면명세서의 ⑤ 세액감면 합계 또는 ⓭ 세액공제명세서의 ⑥ 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0. ㉙·㊼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㉙ 가산세는 제21쪽 ⓰ 가산세명세서의 ⑱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㉚·㊽ 추가납부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㉚ 추가납부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㊽란에 적습니다.
12. ㉜·㊿ 기납부세액란: 제21쪽 ⓯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및 ㉖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제33쪽 ㉒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의 ⑥란의 합계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㉝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㉛ 합계 금액에서 ㉜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4. ㉞·㉟ 납부특례세액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하려는 경우 ㉞란에, 다음 4개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㉟란에 납부특례세액을 적습니다.

    ㊱ 분납할 세액란: ㉝ 납부할 총세액에서 ㉞·㉟ 납부특례세액을 차감·가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그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란에 적습니다.
15. 농어촌특별세란: ㊶ 과세표준란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⑱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㊾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㊻+㊼−㊽)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16. 국세환급금 충당란: ㊿란에는 환급예정인 종합소득세액을 적고, 해당 금액 중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금액을 (55)란에 적습니다.
17. 충당후 환급(납부)할 세액란: (56)란에는 환급예정인 종합소득세액 중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㊿-(55))을 적고, (57)란에는 해당 충당 이후 남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 과세표준	2018년~2020년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2020년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	귀속년도 / 과세표준	2021년~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2022년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	귀속년도 / 과세표준	2023년 이후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이후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35분리과세 40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30경정청구 40기한후신고 50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세무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⑯대리구분 1기장 2조정 3신고 4성실확인	⑰ 관리번호 −	⑱ 조정반번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⑲			
소 득 공 제		⑳			
과 세 표 준(⑲-⑳)		㉑		㊶	
세 율		㉒		㊷	
산 출 세 액		㉓		㊸	
세 액 감 면		㉔			
세 액 공 제		㉕			
결정세액	종 합 과 세(㉓-㉔-㉕)	㉖		㊹	
	분 리 과 세	㉗		㊺	
	합 계(㉖+㉗)	㉘		㊻	
가 산 세		㉙		㊼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㉚		㊽	
합 계(㉘+㉙+㉚)		㉛		㊾	
기 납 부 세 액		㉜		㊿	
납 부(환 급)할 총 세 액(㉛-㉜)		㉝		(51)	
납부특례세액	차 감	㉞		(52)	
	가 산	㉟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㊱			
신고기한 이내 납부(환급)할 세액(㉝-㉞+㉟-㊱)		㊲		(53)	
국 세 환 급 금 충 당		(54)		(55)	
충 당 후 납 부 (환 급) 할 세 액		(56)		(57)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❺ 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11 ~ 18)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중 원천징수 된 것: 11. 다만,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14% 세율)된 것은 18 코드를 적습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12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7 코드를 적습니다.
   다.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7

3. ② 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이자액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❺ 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 코드	② 일련번호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❻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21 ~ 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나.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배당소득: 22
   - 23 ~ 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합니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법인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 대상금액란: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1천만원, 배당소득 1천5백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 배당액란은 1천5백만원을, ⑥ 대상금액란은 5백만원을 적음
7. ⑦ 배당가산액란: [⑥ 대상금액 × 가산율(2024. 1. 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0, 2011.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배당소득금액란: [⑤ 배당액 + ⑦ 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❻ 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 코드	② 일련번호	배당 지급법인		⑤ 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소득금액 (⑤+⑦)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법 인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⑥ 대상금액	⑦ 가산액 (⑥× 가산율)		

210㎜×297㎜(백상지 80g/㎡)

❼ 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31・32・40・41)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1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
   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1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5. ⑥ 기장의무: 사업장별로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⑦ 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 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라. 성실신고확인: 14
   마.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7. ⑧ 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8. ⑨ 총수입금액란 및 ⑪ 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같은 서식의 ⑰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9. ⑩ 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제25쪽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⑯ 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⑳ 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⑨ 총수입금액에서 ⑪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⑪ 소득금액란: ⑨ 총수입금액에서 ⑩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제25쪽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㉑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⑫ 과세기간개시일란・⑬ 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12. ⑭ 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 ⑮ 특수관계인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⑯ ~ ⑲) :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주택 외 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 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를 적으며, ⑰ 수입금액, ⑱ 필요경비 및 ⑲ 소득금액은 ⑧ 주업종코드에 따라 작성한 ⑨ 수입금액, ⑩ 필요경비 및 ⑪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주업종 및 부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15. ⑳ 일련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16. ㉑ 상호(성명)란・㉒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7. ㉓ 소득세란・㉔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④ 상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기장의무									
⑦ 신고유형코드									
⑧ 주업종코드									
⑨ 총수입금액									
⑩ 필요경비									
⑪ 소득금액(⑨-⑩)									
⑫ 과세기간개시일									
⑬ 과세기간종료일									
⑭ 대표 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⑯주택수(개)	⑰수입금액	⑱필요경비	⑲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 일련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㉑ 상호(성명)	㉒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 소득세	㉔ 농어촌특별세

210㎜×297㎜(백상지 80g/㎡)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7)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득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의 근로소득: 58
   ※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코드 58'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1) 61코드 및 67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의 기타소득: 67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6. ⑥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원)	
총급여액	공제액	총연금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70%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350~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700~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액의 20%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7. ⑦ 소득금액란: ⑤ 총수입금액에서 ⑥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소득세란·⑨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③ 상 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 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⑥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⑦ 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210㎜×297㎜(백상지 80g/㎡)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소득별 소득금액란: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이자소득금액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나. 배당소득금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⑧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라.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란: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과 '3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다만,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❿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마.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주택임대업 포함):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2', '40', '4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바.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제11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2.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3.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 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4.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⑩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②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❿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발생과세기간란·② 발생금액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2020.1.1.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의 이월결손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차례로 적습니다.

2. ③ 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④ 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4. ⑤ 소급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 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⑩소급공제받을 사업장별 결손금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⑥ 그 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❿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210㎜×297㎜(백상지 80g/㎡)

⓫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① ~ ⑦)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퇴직,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 각각 1명당 150만원(해당 인원 × 150만원)을 각 난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장애인과 수급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나.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는 ④ 경로우대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 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⑥ 부녀자란에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⑦ 한부모가족란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⑥과 중복인 경우 ⑦을 적용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⑨~⑩)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는 ⑨란에서,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합계)은 ⑩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⑪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4. 특별공제(⑫ ~ ⑭)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⑫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항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료

나. ⑬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다. ⑭ 기부금(이월분)공제란: 2013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5.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내국인은 "1"로,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으며, 장애인은 장애인란에 "1"로 적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관련 조문(제목)을 ⑰란에 적고[예: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다만, 같은 조 내에서 항·호·목의 구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한도 등을 달리하여 해당 항·호·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제1호(신기술사업조합 출자)"와 같이 그 세부 규정(내용)도 부기합니다], 그 소득공제 금액을 ⑲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⑳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㉓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제17쪽⓫-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의 ⑨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⓫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 본 인		연금보험료공제		⑨ 국 민 연 금	
		② 배 우 자				⑩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③ 부 양 가 족(명)		⑪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가공제	④ 경 로 우 대 자(명)		특별공제	⑫ 보험료 공제		
		⑤ 장 애 인(명)			⑬ 주택자금 공제		
		⑥ 부 녀 자			⑭ 기부금(이월분) 공제		
		⑦ 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관계	성명	내외국인	장애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명	내외국인	장애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포함)·손자녀=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포함)·손자녀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내외국인코드: 내국인=1, 외국인=9

※ 장애인코드: 장애인=1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⑱ 코드	⑲ 금 액	⑳ 사업자등록번호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㉓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10㎜×297㎜(백상지 80g/㎡)

⓫-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 작성 후 제15쪽 ⓫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제외합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는 제외합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소득공제 종합한도 요약

항목	구 분	공제액 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 200만원과 연금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 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연 400만원 한도	○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연 600만원 ~ 2,000만원 한도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개인투자조합 출자와 벤처기업 등 및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분은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별 연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 25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한도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전통시장사용분×공제율)+(대중교통이용분×공제율)+(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문화체육사용분×공제율) ※ '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년 대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한도 : 100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210㎜×297㎜(백상지 80g/㎡)

⓫-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소득세법」 상 특별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① 주택자금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②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거주자
④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⑤ 우리사주조합 출자(출연금)		근로자
⑥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근로자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자

⑧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합계 (①~⑦)		⑨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210㎜×297㎜(백상지 80g/㎡)

⑫ 세액감면명세서 및 ⑬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① 조문(제목)란: 세액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3.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4. ③ 세액감면·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5. ④ 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가. 배당세액공제란: 제23쪽 ⑯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4 배당세액공제의 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 종합소득금액에 주택(부수토지 포함)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는 제29쪽 ㉑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4 배당세액공제의 ㊽란의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
   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란: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10호의4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같은 서식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다. 자녀세액공제란: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손자녀가 있는 경우: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인 경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을 합한 금액(예: 3명은 95만원, 4명은 135만원, 5명은 175만원)
      2)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라.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금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15%	①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 ②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익('23.7.1. 이후 납입분) ③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부동산 양도차익('25년 이후 양도분) ※ ② + ③ → 생애누적 1억원 한도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2%	

   마. 특별세액공제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공제율: 12%. 다만,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는 15%),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및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2)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이 기부금 세액공제란을 적습니다.
         가) 공제대상 기부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 중 기부금 코드별로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하되,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40, 41의 기부금 공제액은 이 란에 적고, 코드 20, 42, 43의 기부금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
            ㉢ 특례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 Ⓑ
               Ⓐ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종교단체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제외) 중 적은 금액
            ㉥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나) 세액공제액: 전체 기부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2024년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특별재난지역은 30%)를 세액공제합니다.
      3)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13만원을,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12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7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7. 혼인세액공제란: 2024년~20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세액란에 50만원을 적습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세액공제금액과 세액감면금액을 각각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⑭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예: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③ 연도란 및 ④ 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⑤ 당기 환입액 및 ⑥ 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 + 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5. ⑦ 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⑫ 세액감면명세서

① 조문(제목)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⑬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 항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적용률(㉡)	③ 세액공제(㉠×㉡)	④ 사업자등록번호
①「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명)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30%)		
	교육비				15%		
	기부금	특례기부금			15% 또는 30%		
		일반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일반			15/100		
		특별재난지역			30/100		
혼인세액공제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⑭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210㎜×297㎜(백상지 80g/㎡)

⑮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무신고가산세、② 과소신고가산세: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③ 납부지연가산세란: 가산세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를,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를 적용합니다.
3. ④ 보고불성실란 중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와 ⑪ 신용카드거부등란과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란의 위장가공가산세는 ’18. 1. 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4. ⑤ 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⑨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6. ⑩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7. ⑩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8. ④ 보고불성실가산세·⑤ 증빙불비가산세·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와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11.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1천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⑰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금액의 100분의 1을,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을 적습니다.
14.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습니다.

⑯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습니다.
2.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3. ④·㉑ 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⑤ 이자소득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㉔ 사업소득란: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㉓란의 합계액과 ㉔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⑧·㉕ 근로소득란: 제11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8. ⑨-1 연금소득(종합)란 및 ⑨-2 연금소득(분리)란: 제11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종합과세대상 연금소득과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구분하여 해당 란에 각각 적습니다.
9. ⑩ 기타소득란: 제11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중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⑮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②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부지연	미납일수		( )		22/100,000	
	미납부(환급)세액					
④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계산서	미발급(위장가공)	공급가액		2/100	
		지연발급	공급가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급가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3/1,000(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금액		1/1,000(5/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소계					
⑤ 증빙불비	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허위수취		허위수취금액		2/100	
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무신고		수입금액		0.5/100	
	과소신고		수입금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⑨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산출세액		20/100	
⑩ 사업용계좌 미신고등	미신고		수입(미사용)금액		0.2/100	
	미사용		미사용금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래거부·불성실		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		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발급거부·불성실		금액		5/100	
	발급거부·불성실		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미발급		금액		20/100(10/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5/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등금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수입금액		2/10,0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⑰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2/1,000	
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미(불명)제출금액		1/100	
⑲ 합계						

⑯ 기납부세액명세서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세액		①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㉑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자소득	⑤		㉒
	배당소득	⑥		㉓
	사업소득	⑦		㉔
	근로소득	⑧		㉕
	연금소득	(종합)	⑨-1	
		(분리)	⑨-2	
	기타소득	⑩		
기납부세액 합계		⑪		㉖

210㎜×297㎜(백상지 80g/㎡)

⑰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귀속까지는 4천만원)

2. ❷ 또는 ❸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❷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❸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8" 코드는 ⓐ, "12·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 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26' 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22' 코드, '29' 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 - 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가산율)을 적습니다.

7. ⑭·㉕·㉞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㉙·㊳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8' 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⑯·㉖·㉟ 소득공제란: 제15쪽 ⓫ 소득공제명세서의 ㉒ 소득공제합계에서 ㉓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⑳·㉔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㉜ 세액란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㉒·㉝ 세액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100 또는 14/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❹ 배당세액공제: ㊵란은 ⑬와 (㉛-㉚)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⑰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❶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25%)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이익(14%)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❷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❸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⑩ 금융소득금액(⑤+⑨)		㉜ [(②+⑦)× (14/100)]	
⑪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㉝ [③× (25/100)]	
⑫ 기준초과금액(⑩-⑪)		㉞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⑬ 배당가산액		㉟ 소득공제	
⑭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㊱ 과세표준(㉞-㉟)	
⑮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⑫+⑬+⑭)		㊲ 기본세율	
⑯ 소득공제		㊳ 산출세액	
⑰ 과세표준(⑮-⑯)		㊴ 종합소득산출세액(㉜+㉝+㊳)	
⑱ 기본세율			
⑲ 산출세액			
⑳ [⑪× (14/100)]			
㉑ 비교산출세액계(⑲+⑳)			
㉒ 비영업대금이익[(①+③)×25/100 + ⓐ×14/100]			
㉓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⑩-(①+ⓐ+③)]			
㉔ [㉓× (14/100)]			
㉕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⑭)			
㉖ 소득공제			
㉗ 과세표준(㉕-㉖)			
㉘ 기본세율			
㉙ 산출세액			
㉚ 비교산출세액 계(㉒+㉔+㉙)			
㉛ 종합소득산출세액(㉑와 ㉚ 중 큰 금액)			

❹ 배당세액공제			
㊵ [⑬와 (㉛-㉚) 중 작은 금액]			

210㎜×297㎜(백상지 80g/㎡)

⑱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 ㉒란부터 ㉗란까지 및 ⑩란부터 ㉑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40, 32)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

2. ② 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 시 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 업태/종목·⑧ 업종코드·⑨ 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㉒~㉕)과 임차료(㉖~㉙)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㉓·㉗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㉔·㉘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㉕·㉙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c)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㉛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을 ㉝란에 적습니다.

6.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⑫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상의 ㉞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½).

9. ⑱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⑲ 금액란: 1에서 ⑱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⑳ 비교소득금액란: ⑲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4, 간편장부대상자: 2.8)"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㉑ 소득금액란: ⑰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⑰란의 기준소득금액과 ⑳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⑱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득구분코드	( )	( )	계( )
② 일련번호			
③ 사업장소재지			
④ 과세기간			. . .부터 . . .까지
⑤ 상호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업태/종목	/	/	/
⑧ 업종코드			
⑨ 총수입금액			
기준소득금액 / 필요경비 / 주요경비 /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㉞)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계(⑩+⑪−⑫)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 ⑭ 기준경비율(%)			
⑮ 금액(⑨×⑭)			
⑯ 필요경비 계(⑬+⑮)			
⑰ 기준소득금액(⑨-⑯)("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비교소득금액 /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 ⑱ 단순경비율(%)			
⑲ 금액[⑨×(1−⑱)]			
⑳ 비교소득금액(⑲×「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정하는 배율)			
㉑ 소득금액(⑰ 또는 ⑳ 중 적은 금액)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분	계(A)(=B+C+D)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㉒		㉓		㉔		㉕	
임차료	㉖		㉗		㉘		㉙	
인건비	㉚		㉛		㉜		㉝	
계(㉞=⑪)	㉞		㉟		㊱		㊲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210㎜×297㎜(백상지 80g/㎡)

⑲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쪽 ⑳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 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 총수입금액란: 제5쪽의 ⑤ 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7쪽의 ⑧ 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제9쪽의 ⑧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제11쪽의 ⑤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소득금액란: 제13쪽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제15쪽의 ㉒ 소득공제합계에서 ㉓ 소득공제종합한도 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마.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바.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5. ③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② 합계란의 금액에서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⑤~⑫란: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가. ㉮~㉱란: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 세율란: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8. 비교산출세액: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 산출세액과 ②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⑲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 분	① 종합소득 금액 합계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② 합계	③ 주택 등 매매차익 외 종합소득	④ 주택등매매차익 합계(⑤+~+⑪)
㉮ 총수입금액 (주택등매매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2.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구 분	⑤ 누진세율 적용자산	⑥ 누진+10%세율 적용자산	⑦ 누진+20%세율 적용자산	⑧ 누진+30%세율 적용자산	⑨ 40%세율 적용자산	⑩ 50%세율 적용자산	⑪ 60%세율 적용자산	⑫ 70%세율 적용자산
㉮ 총수입금액 (주택등매매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210㎜×297㎜(백상지 80g/㎡)

⑳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❷ 또는 ❸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❷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❸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8" 코드는 ⓐ, "12·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26' 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22' 코드, '29' 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가산율)을 적습니다.

7. ⑭·㉛·㊹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㉟·㊴·㊾·㊹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8' 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⑯·㉜·㊻ 소득공제란: 제15쪽 ⓫ 소득공제명세서의 ㉒ 소득공제합계에서 ㉓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⑳·㉚·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㊷ 세액란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㉘·㊸ 세액란: 비영업대금이익은 25/100 또는 14/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❹ 배당세액공제: ㊽란은 ⑬와 [(㊶-(㊱와 ㊵ 중 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4. ㉒·㊿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제27쪽 ⓭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㉞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㉖·㊺ 주택등매매차익세액란: 제27쪽 ⓭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㉞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⑳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❶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25%)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이익(14%)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❷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❸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⑩ 금융소득금액(⑤+⑨)		㊷ [(②+⑦)× (14/100)]	
⑪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㊸ [③× (25/100)]	
⑫ 기준초과금액(⑩-⑪)		㊹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⑬ 배 당 가 산 액		㊺ 종합소득금액(㊹)	
⑭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㊻ 소 득 공 제	
⑮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⑫+⑬+⑭)		㊼ 과 세 표 준(㊺-㊻)	
⑯ 소 득 공 제		㊽ 기 본 세 율	
⑰ 과 세 표 준(⑮-⑯)		㊾ 산 출 세 액	
⑱ 기 본 세 율		㊿ 비교산출세액 계(㊷+㊸+㊾)	
⑲ 산 출 세 액		(51)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⑳ [⑪× (14/100)]		(52)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㊼-(51))	
㉑ 비교산출세액 계(⑲+⑳)		(53) 기 본 세 율	
㉒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54) 산 출 세 액	
㉓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⑰-㉒)		(55) 주택등매매차익세액	
㉔ 기 본 세 율		(56) 비교산출세액(㊷+㊸+(54)+(55))	
㉕ 산 출 세 액		(57) 종합소득산출세액(㊿와 (56) 중 큰 금액)	
㉖ 주택등매매차익세액		❹ 배당세액공제액	
㉗ 비교산출세액(⑳+㉕+㉖)		(58) ⑬와 [(㊶-(㊱와 ㊵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	
㉘ 비영업대금이익[(①+③)×25/100+ⓐ×14/100]			
㉙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⑩-(①+ⓐ+③)]			
㉚ [㉙× (14/100)]			
㉛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⑭)			
㉜ 소 득 공 제			
㉝ 과 세 표 준(㉛-㉜)			
㉞ 기 본 세 율			
㉟ 산 출 세 액			
㊱ 비교산출세액 계(㉘+㉚+㉟)			
㊲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㉝-㉒)			
㊳ 기 본 세 율			
㊴ 산 출 세 액			
㊵ 비교산출세액 계(㉖+㉘+㉚+㊴)			
㊶ 종합소득산출세액 (㉑·㉗·㊱·㊵ 중 큰 금액)			

210㎜×297㎜(백상지 80g/㎡)

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 12. 31.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비과세 대상 행사이익 제외)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납부특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2.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별로 작성합니다.
5. "⑮ 납부특례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타)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⑯ 발생과세기간"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과세기간을 적습니다.
7. "⑰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란: "⑮ 납부특례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⑱ 1차년도란부터 ㉑ 4차년도란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납부 시 각각 납부해야 하는 세액(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을 적습니다.
9. ㉒ 잔액란: ⑰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에서 ⑱ 1차년도란부터 ㉑ 4차년도란까지에 적힌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

① 법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⑨ 행사이익 {⑦×(⑧-⑤)}	⑩ 비과세 행사이익	⑪과세대상 행사이익 (⑨-⑩)
		③ 일자	④ 주식수	⑤ 주당 행사가액	⑥ 일자	⑦ 주식수	⑧ 주당시가			
합계										

■ 납부특례세액의 계산

구 분	⑫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⑭ 차이 (⑫-⑬)	⑮ 납부특례세액 ⑭×4/5
㉮ 근로(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분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

⑯ 발생 과세기간	⑰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	납부액				㉒ 잔 액 (⑰-⑱-⑲-⑳-㉑)
		⑱ 1차년도	⑲ 2차년도	⑳ 3차년도	㉑ 4차년도	

210㎜×297㎜(백상지 80g/㎡)

㉒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라.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마.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연간근로소득란: 지급자별로 연간 지급한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의 금액은 3쪽 ㉚기납부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단, 21쪽 ⑯ 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7. ⑦ 과세표준란: ⑤의 연간근로소득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⑧ 세율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말합니다.

9. ⑨ 산출세액란의 금액은 3쪽 ㉓산출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

1. 근로소득 명세서

① 소득구분 코드	② 일련번호	소득의 지급자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⑤ 연간근로소득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2. 산출세액의 계산

⑦ 과세표준	⑧ 세율	⑨ 산출세액(⑦×⑧)
	19%	

210㎜×297㎜(백상지 80g/㎡)

●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및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 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소득세법」 제64조의4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에는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② 필요경비란
   - 3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이하 같음)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에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 69 분리과세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83 기타소득(가상자산 양도·대여): 양도(교환)한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라 가상자산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기초(매년 1월 1일을 말합니다) 보유 가상자산 가액과 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가상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기초 보유 수량과 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수량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③ 공제금액란
   - 3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left(\frac{\text{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text{총주택임대수입금액}} \times 400\text{만원}\right) + \left(\frac{\text{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text{총주택임대수입금액}} \times 200\text{만원}\right)$$

4. ⑦ 세액감면란
   - 3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적습니다.
5. ⑨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 3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⑦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1.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

(단위: 원)

구 분	3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34 연금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83 기타소득 (가상자산 양도·대여)
① 총수입금액				
② 필요경비				
③ 공제금액				2,500,000
④ 소득금액(과세표준): ①-②-③				
⑤ 세율	14%	15%	20%	20%
⑥ 산출세액: ④×⑤				
⑦ 세액감면				
⑧ 결정세액: ⑥-⑦				
⑧ 결정세액 합계				

2. 농어촌특별세 계산

(단위: 원)

⑨ 과세표준: ⑦ 세액감면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⑩ 세율	20%	
⑪ 산출세액: ⑨×⑩		
⑫ 결정세액		

210㎜×297㎜(백상지 80g/㎡)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용)

관리 번호	-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주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㉜ 추계 – 단순율 ㊵ 비사업자	⑨ 기장의무	㉒ 간편장부대상자 ㉓ 비사업자	⑩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 ⑳ 수정신고, ㊵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분	금액
⑬ 종합소득금액: ❺ 사업소득명세(㉙)와 ❼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㊽)의 소득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⑭ 소득공제: ⑮~㉙합계-㉚	

소득공제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코드	장애인코드	주민등록번호	구분	인원	금액
					기본공제 ⑮ 본인		
					⑯ 배우자		
					⑰ 부양가족		
					추가공제 ⑱ 경로우대자		
					⑲ 장애인		
					⑳ 부녀자		
					㉑ 한부모가족		

㉒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제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㉓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㉔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㉕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㉖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벤처기업투자	
㉗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㉙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제3쪽의 ❽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합계금액(㊽)을 적습니다.		
㉚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㉛ 과세표준: ⑬ – ⑭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㉜ 세율: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㉝ 산출세액: ㉛×㉜ – 누진공제액(제5쪽 작성방법 참고)		
㉞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㉟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제3쪽의 ❾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합계금액(⑩)을 적습니다.		
㊱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㊲~㊼)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㊲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㊳ 혼인세액공제: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㊴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손자녀 ※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명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명	
㊵ 연금계좌세액공제: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공제대상금액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만기 시 연금계좌납입액	
㊶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 대상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 중 3천만원 초과분은 40%]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공제 가능)	특례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일반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㊷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7만원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3만원(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 이상의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0원)			
㊸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㊹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분 25%)	
㊺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일반	15%	
	10만원 초과 특별재난지역	30%	
㊻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제3쪽의 ❿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합계금액(⑪)을 적습니다.			
㊼ 전자신고세액공제			
㊽ 결정세액: ㉝ – ㉞ – ㉟ – ㊱("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	금액
㊾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㊿~58)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㊿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51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52 납부지연		미납일수		( )	22/100,000	
		미납부(환급)세액				
53 보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54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5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산출세액		20/100	
56 신용카드거부	거래거부·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건수				5,000원	
57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발급거부·불성실금액				5/100	
	발급거부·불성실건수				5,000원	
	미발급금액				20/100 (10/100)	
58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2/1,000	

㊾ 총결정세액: ㊽+㊾	
60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60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 ❻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의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㊽) 합계와 ❼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㊽) 합계를 적습니다.	
61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㊾-60	
62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63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61-62	

❶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64 과세표준: ⑱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65 세율	20%
66 산출세액: 64×65	
67 가산세액	
68 합계: 66+67	
69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된 ㊿ 농어촌특별세 합계를 적습니다.	
70 납부(환급)할 세액: 68-69	

❺ 사업소득명세

71 일련번호	사업장 72 상호(성명)	사업장 73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74 소득구분코드(5쪽 작성방법 참고)	75 업종코드	76 총수입금액	77 단순경비율(%) 일반율	77 단순경비율(%) 자가율	78 필요경비(=76×77)	79 소득금액(=76-78)

❻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

80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8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사업자등록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❼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

㉘ 소득 구분코드 (6쪽 작성 방법 참조)	㉙ 일련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㉚ 상호(성명)	㉛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㉜ 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㉝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㉞ 소득금액 (㉜-㉝)	원천징수세액 ㉟ 소득세	㊱ 농어촌특별세

❽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특별소득공제	㊲ 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㊳ 주택자금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㊴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㊵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㊶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㊷ 신용카드 등 사용액	
	㊸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㊹ 합 계: ㊲+㊳+㊴+㊵+㊶+㊷+㊸		

❾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㊺「소득세법」상 세액감면(제59조의5)	
㊻「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	
㊼「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㊽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㊾ 합계: ㊺+㊻+㊼+㊽	

❿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㊿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51)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장애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52)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53)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54)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55) 외국납부세액공제				
(56)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57) 합 계: (50)~(56) 세액공제액 합계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거나 두 개 이상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㉗ 단순경비율(%)": 귀하께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합니다),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6천만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합니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만 해당합니다): 3,600만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합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합니다),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는 2008. 1. 1.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2.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및 "⑫ 계좌번호": "㊶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3. "⑭ 소득공제"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습니다.

가.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란: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는 곳으로, 관계코드란에는 본인과 인적공제 대상자의 관계에 관한 코드번호[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포함)·손자녀 =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를 포함합니다)·손자녀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를 적고, 내외국인코드란에는 내국인은 "1"로, 외국인은 경우는 "9"로 구분하여 적으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코드란에 "1"로 적습니다.

나. 기본공제란: 본인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인원란에 적고, 해당 인원수 1명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기본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습니다.

1)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 부양가족: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해당합니다.

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다.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를 인원란에 적고, 해당 금액(추가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습니다. 다만, 3)과 4)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를 적용합니다.

1)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사람)인 경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50만원

4)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4. "㉒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란: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5. "㉖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출자·투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투자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조합출자란에 적고,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투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투자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벤처기업투자란에 적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6. "㉗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00만원, 6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는 4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는 200만원을 한도]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7. “㊲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란: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10호의4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같은 서식 “⑯ 공제할 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㊳ 혼인세액공제”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세액란에 50만원을 적습니다.

9. “㊵ 연금계좌세액공제”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금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15%	①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 ②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익(‘23.7.1. 이후 납입분) ③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부동산 양도차익(’25년 이후 양도분) ※ ② + ③ → 생애누적 1억원 한도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2%	

10. “㊷ 세율”란 및 “㊸ 산출세액”란: 세율란에는 다음의 세율표 중 과세표준(㊶)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고, 산출세액란에는 [과세표준(㊶)×세율(㊷)－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과세표준 \ 귀속년도	2018년~2020년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2020년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귀속년도	2021년～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2022년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귀속년도	2023년 이후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이후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11. “㊶ 기부금세액공제”란: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만 적습니다.

12. “㊾ 가산세액”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되,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가. “㊿ 무신고”란 및 “(51) 과소신고”란: 미달세액에 가산세율(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52) 납부지연”란: 지연세액에 가산세율(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53) 보고불성실란: 지급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5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마. “(58)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62) 분납할 세액”란: (61)란의 납부할 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그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란에 적습니다.

14. “(74) 소득구분코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코드번호 중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은 제외합니다)의 사업소득: 30

나. 주택임대업(업종코드가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업만 해당합니다)의 사업소득: 32

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작성방법

15. “(82) 소득구분코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코드번호 중 해당하는 번호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경우

1)「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6)「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합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을 말합니다.

7) 종교관련종사자가 「소득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의 근로소득: 58

※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코드 58’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연금소득의 경우: 66

다. 기타소득의 경우

1) ‘소득구분코드 61’ 및 ‘소득구분코드 67’ 외의 기타소득: 60

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의 기타소득: 67

16. “(91)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및 고용보험료를 적습니다.

17. “(92) 주택자금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말합니다.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을 말합니다.

18. 그 밖의 소득공제란(“(93)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란부터 “(9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란까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구 분	공제액 한도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과 연 400만원 중 작은 금액 한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 25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한도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전통시장사용분×공제율)+(대중교통사용분×공제율)+(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공제율) ※ ’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년 대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한도 : 100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19. “(10)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란: 근로소득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면받은 세액합계액을 적습니다.

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나.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라.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20. “(10)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 한도)

21. “(11) 월세액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합니다)가 지급한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 <개정 2026. 3. 00.>

관리번호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구분	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 40 기한 후 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⑧ 금융기관/체신관 서명	⑨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분	금액
㉛ 총수입금액: ❶ 종교인소득 명세의 ㉑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㉜ 필요경비: 제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㉝ 종합소득금액: ㉛-㉜	
㉞ 소득공제: ㉟~㊺의 공제금액 합계에서 ㊻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코드	장애인코드	주민등록번호

인적공제

	구분	인원	금액
기본공제	㉟ 본인		
	㊱ 배우자		
	㊲ 부양가족		
추가공제	㊳ 경로우대자		
	㊴ 장애인		
	㊵ 부녀자		
	㊶ 한부모가족		

㊷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제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㊸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㊹ 개인연금저축공제: 제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㊺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공제: 제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㊻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제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㊼ 과세표준: ㉝-㉞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㊽ 세율: 제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㊾ 산출세액: ㊼×㊽ -누진공제액(제4쪽 작성방법 참고)	
㊿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51~59)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51 혼인세액공제: 제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52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합니다)·손자녀 ※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명	
	출산·입양 자녀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명	
5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구분			금액
세액공제명세	54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특례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일반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55 표준세액공제: 7만원		
	56 전자신고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57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58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일반	
		10만원 초과 특별재난지역	
	59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60 결정세액: ㊾-㊿("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61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계산명세(62~64)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62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63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64 납부지연	미납일수	( )		22/100,000	
	미납부(환급)세액				

65 총결정세액: 60+61		
기납부세액	66 원천징수세액: ❶ 종교인소득 명세의 72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7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65-66		

❶ 종교인소득 명세

68 일련번호	소득의 지급자		71 총수입금액	72 원천징수세액
	69 종교단체명	70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1				
2				
3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 이 서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조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사용(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⑦ 신고구분"란: 해당되는 신고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㊼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5. "㊶ 총수입금액"란: "❶ 종교인소득 명세"란의 ㉑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㊷ 필요경비"란: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 금액을 적되,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7. "㊹ 소득공제"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습니다.

가.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란: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는 곳으로, 관계코드9란에는 본인과 인적공제 대상자의 관계에 관한 코드번호[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를 포함합니다)·손자녀 =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를 포함합니다)·손자녀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를 적고, 내외국인코드란에는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구분하여 적으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코드란에 "1"로 적습니다.

나. 기본공제란: 본인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인원란에 적고, 해당 인원수 1명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기본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습니다.

1)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 부양가족: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해당합니다.

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다.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를 인원란에 적고, 해당 금액(추가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습니다. 다만, 3)과 4)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를 적용합니다.

1)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사람)인 경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50만원

4)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8. "㊷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란: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9. "㊹ 개인연금저축공제"란: 2010년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작성하며, 그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0. "㊺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 및 한도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구분	출자 · 투자 금액	공제율	한도액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제1호 · 제2호 또는 제5호)		10%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분 ~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11. "㊻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 이 작성방법란 제10호의 표에 따른 공제율 중 10%의 공제율을 적용받은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공제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2. "㊽ 세율"란 및 "㊾ 산출세액"란: 세율란에는 다음의 세율표 중 과세표준(㊼)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고, 산출세액란에는 [과세표준(㊼)×세율(㊽)-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 과세표준	2018년~2020년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2020년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	귀속년도 / 과세표준	2021년~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2022년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	귀속년도 / 과세표준	2023년 이후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이후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13. "㊶ 혼인세액공제"란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세액란에 50만원을 적습니다.
14. "㊸ 연금계좌세액공제"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금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15%	①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 ②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익('23.7.1. 이후 납입분) ③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부동산 양도차익('25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② + ③ → 생애누적 1억원 한도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2%	

15. "㊹ 기부금세액공제"란, "㊼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란 및 "㊽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가. 공제 대상금액 한도

1)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2)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

3) 특례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5)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 Ⓑ

Ⓐ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종교단체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제외) 중 적은 금액

6)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나. 세액공제 금액

1)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외의 기부금(㊹): 가목에 따라 계산한 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대상금액을 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다만, 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2) 정치자금기부금(㊼):「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㊽):「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특별재난지역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6. "㊾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으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7. "㊿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산출세액에 국외에서 발생한 종교인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8. "(61) 가산세액"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되,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가. "(62) 무신고"란 및 (63) 과소신고"란에는 미달세액에 가산세율(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64) 납부지연"란에는 지연세액에 가산세율(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19. "(66) 원천징수세액"란: "❶ 종교인소득 명세란"의 "㉒ 원천징수세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0. "❶ 종교인소득 명세"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고 적되, "㉑ 총수입금액"란에는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총수입금액의 합계를 적고, "㉒ 원천징수세액"란에는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년 귀속)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 ⑳ 수정신고 ㉚ 경정청구 ㊵ 기한후신고		⑤ 전화번호
⑥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⑦ 은행명		⑧ 계좌번호

❸ 세무대리인

⑨ 성명	⑩ 전화번호	⑪ 대리구분	③ 신고
⑫ 관리번호 -		⑬ 조정반번호 -	

❹ 퇴직소득명세

⑭ 지급처명 /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입사일 / ⑰ 퇴사일	⑱ 지급일 / ⑲ 근속월수	⑳ 퇴직급여	㉑ 비과세 퇴직급여	㉒ 과세대상 퇴직급여
합 계					

❺ 근속연수계산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정산근속연수	㉗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㉘ 2013.1.1.이후 근속연수(㉖-㉗)

❻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퇴직소득세 금 액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㉒)	㉙	
		근속연수공제	㉚	
		환산급여 [(㉙-㉚)× 12배/정산근속연수]	㉛	
		환산급여별공제	㉜	
		퇴직소득과세표준(㉛-㉜)	㉝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㉝× 세율)	㉞	
		산출세액(㉞× 정산근속연수/12배)	㉟	
		세액공제	㊽	
		가산세	㊾	
		기납부 세액	㊿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㉟-㊽+㊾-㊿)	51	
		분납할 세액(2월내)	52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51-52)	53	

❼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 산 내 용		퇴직소득세 금 액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㉒)	㉙	
		근속연수공제	㉚	
		환산급여 [(㉙-㉚)× 12배/정산근속연수]	㉛	
		환산급여별공제	㉜	
		퇴직소득과세표준(㉛-㉜)	㉝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㉝× 세율)	㉞	
		산출세액(㉞× 정산근속연수/12배)	㉟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㉒)	36	
		퇴직소득정률공제	37	
		근속연수공제	38	
		퇴직소득과세표준(36-37-38)	39	

	계 산 내 용		2012.12.31.이전	2013.1.1.이후	합계
세액계산	과세표준안분 (39×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40			
	연평균과세표준(40/각근속연수)	41			
	환산과세표준(41× 5배)	42			
	환산산출세액(42× 세율)	43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 41× 세율, 13.1.1.이후: 43/5배)	44			
	산출세액(44× 각 근속연수)	45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46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35× 퇴직연도별 비율) + [45× (100%-퇴직연도별 비율)]	47	
	세액공제	48	
	가산세	49	
	기납부 세액	50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47-48+49-50)	51	
	분납할 세액(2월내)	52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51-52)	53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1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 일 자	인

※ 첨부서류: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성 방 법

1.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3. ❶ 기본사항(⑥)란: 퇴직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제4호의 퇴직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만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 1' 을 선택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⑦·⑧)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5. ❸ 세무대리인(⑨~⑬)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❹ 퇴직소득명세(⑭~㉒)란: ⑳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합니다.
   ※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2)] 또는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에 따라 작성합니다.
7. ❺ 근속연수계산(㉓~㉘)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8. ❼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㉙ 퇴직소득란: ㉒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나. ㉜ 환산급여별공제란: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구분 \ 환산급여	8백만원 이하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8백만원 초과분의 60%)	4천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의 55%)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

   다. ㉞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라. ㊵ 과세표준안분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 12. 31.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 1. 1.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마. ㊷ 환산과세표준란과 ㊸환산산출세액란: 2013. 1. 1.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바. ㊹ 연평균산출세액란: 2012. 12. 31. 이전 부분은 ㊶ 연평균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2013. 1. 1. 이후 부분은 ㊸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사. ㊼ 퇴직소득세 산출세액란: ㊻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 퇴직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퇴직연도별 비율	20%	40%	60%	80%

   아. ㊽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자. ㊾ 가산세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에 해당하는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9.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6. 3. 00.>

(앞쪽)

교 육 비 납 입 증 명 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인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대상자	⑨ 성명	⑩ 신청인과의 관계	

Ⅰ. 교육비 부담 명세

⑪ 납부연월	⑫ 종 류	⑬ 구 분	⑭ 총교육비(A)	⑮ 장학금 등(B)		⑯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A-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						
.						
.						
.						
계						

Ⅱ. 교복 구입 명세

⑰ 구입연월	⑱ 품 목	⑲ 수 량	⑳ 단 가	㉑ 금 액
.				
.				
.				
.				
계				
사용목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 작성대상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 등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예능 분야(음악,미술,무용) 학원 또는 체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

1. "신청인" 란에는 교육비를 지출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상자" 란에는 지출된 교육비의 수혜자를 적습니다.
3. "Ⅰ. 교육비부담명세"란에는 교복구입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에 한정함)은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적습니다.
4. "⑫ 종류" 란에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대학교, 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재활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한국장학재단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⑬ 구분" 란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현장체험학습비, 특별활동비*(단,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에 한정함), 대학입학전형료, 보육비용, 장애인특수교육비, 학자금상환액, 그 밖의 교육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는 포함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6. 해당 연도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하고 그 장학금 등의 합계액을 ⑮ 장학금 등의 수혜액란에 모두 적습니다.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다.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라.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마.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
7. "⑭ 총교육비(A)" 합계금액이 "⑮ 장학금 등의 수혜액"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⑯ 교육비부담액(C=A-B)"란에 "0"을 적습니다.
8. 중·고등학생 교복 판매업자는 교복(체육복 포함)구입 명세를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적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기 업 업 무 추 진 비 조 정 명 세 서 (1)

①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기 업 업 무 추 진 비 등 명 세

④ 계 정 과 목						합 계
⑤ 계 정 금 액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의 지출금액 등 포함)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⑦ 3만원 초과 ※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⑧ 3만원 이하				
		⑨ 현물기업업무추진비				
		⑩ 계(⑦ + ⑧ + ⑨)				
	⑪ 계(⑥ + ⑩)					
필요경비 부인액	⑫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⑦)					
	⑬ 기 타					
	⑭ 계 (⑫ + ⑬)					
⑮ 조정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⑪ − 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

1.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거래분과 계산서·세금계산서 거래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기업업무추진비 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⑦ 3만원 초과(경조금은 20만원 초과)란 및 ⑧ 1만원 이하란: 신용카드등 미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현물기업업무추진비는 제외합니다)를 건별금액으로 구분하여 그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2020년 지출분까지는 1만원 초과분).

3. ⑬ 기타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기 업 업 무 추 진 비 조 정 명 세 서 (2)

①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호		③ 성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분			금액
④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3천600만원) × 과세기간월수( )/12			
일반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⑥ 소계	
	⑦ 특수관계 관련 수입금액	(⑤ − ⑥) × 10/100	
	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④+⑥+⑦)		
문화기업 업무추진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⑨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⑩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⑨와 (⑧×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	⑪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⑬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⑪, ⑫의 합계액과 (⑧×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⑭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⑧ + ⑩ + ⑬)			
⑮ 조정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명세서(1)의 ⑮]			
⑯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⑮ − ⑭)			
⑰ 필요경비 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지출액(⑭와 ⑮ 중 적은 금액)			

2. 기준수입금액 명세

⑱ 일반수입금액	⑲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	⑳ 총수입금액 (⑱ + ⑲)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2)]

1. ④란 작성 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외의 경우에는 1천 2백만원을 적용합니다.
2.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은 "⑰ 일반수입금액"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수입금액은 "⑮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금액으로 구분하여 해당 비율을 적용·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3.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⑨·⑩)"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⑪~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⑪, ⑫의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지출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⑫의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7항에 따라 현금 구입을 증명하는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5. "⑮ 조정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의 "⑮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⑱ 일반수입금액"란 및 "⑲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6. 3. 00.>

(앞쪽)

기부금 조정명세서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1.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① 기준소득금액		⑤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MIN[④ , ㉖]	
②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⑥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MIN[(④-⑤)>0, ③]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제76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③-⑥)>0]	
④ 한도액 [(①-②)>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⑫ 소득금액 차감잔액 [(⑧-⑪)>0]	
⑩ 한도액 (⑧×30%)		⑬ 한도초과액[(⑨-⑩)>0]	
⑪ 필요경비 산입액 MIN(⑨, ⑩)			

3.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⑭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기부금 해당 금액		⑱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MIN[⑰ , ㉖]	
⑮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해당 금액		⑲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MIN[(⑰-⑱)>0, ⑯]	
⑯ 기부금 해당 금액 (⑭+⑮)		⑳ 한도초과액[(⑯-⑲)>0]	
⑰ 기부금 한도액(㉠또는㉡)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⑫×10%+(⑫×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⑫×30%)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㉑ 기부금 합계액(③+⑨+⑯)	㉒ 필요경비 산입 합계 (⑥+⑪+⑲)	㉓ 한도초과액 합계(㉑-㉒)=(⑦+⑬+⑳)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연도	㉔ 기부금액	㉕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㉖ 공제대상 금액 (㉔-㉕)	㉗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액	㉘ 다음 과세기간 이월액(㉖-㉗)
합 계						

작 성 방 법

1. ①기준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③, ⑨, ⑭, ⑮ 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의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㉗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⑥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⑥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8.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⑤, ⑱란에 적어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 이월액을 과세기간별·기부금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4서식] <개정 2026. 3. 00.>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안)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양도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상생임대주택 (양도주택)	④ 소 재 지	
	⑤ 취득일	⑥ 양도일
	⑦ 직전임대차계약체결일(년 월 일)	⑧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일(년 월 일)

임대내역(⑨)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성명	생년월일	보증금	월세	개시일	종료일	기간
⑩ 직전 임대차계약							
⑪ 상생 임대차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5항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 서류	1. 직전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상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성 방 법

1. ⑦란:직전임대차계약체결일은 ⑤취득일 이후여야합니다.
2. ⑨란: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내역을 적습니다.
3. ⑩ · ⑪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하는 모든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내역을 적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주택 이름		주택 소재지	
양도자 상호		양도자 사업자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사업계획 승인번호		사업계획 승인일	

발급번호	발급일	양수자		미분양주택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동・호수 포함)	부동산 고유번호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관리번호	-

(년 귀속)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① 신고인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국적		국적코드
②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드	양도소득세 합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도소득금액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도소득기본공제							
⑧ 과세표준 (④+⑤-⑥-⑦)							
⑨ 세율							
⑩ 산출세액							
⑪ 감면세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원천징수세액공제							
⑭ 연금계좌세액공제							
⑮ 전자신고세액공제							
⑯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장불성실 등						
	계						
⑰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							
⑱ 납부할 세액 (⑩-⑪-⑫-⑬-⑭-⑮+⑯-⑰)							
⑲ 분납(물납)할 세액							
⑳ 납부세액							
㉑ 환급세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㉒ 소득세 감면세액	
㉓ 세율	
㉔ 산출세액	
㉕ 수정신고가산세등	
㉖ 기신고·결정·경정세액	
㉗ 납부할 세액	
㉘ 분납할 세액	
㉙ 납부세액	
㉚ 환급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급금 계좌신고

㉛ 금융기관명	
㉜ 계좌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이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3. ②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이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4. ③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④ 양도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⑱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공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주식은 '20.1. 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 통산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8. ⑩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 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9. ⑪ 감면세액란 및 ⑫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 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⑫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납세자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된 세액과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을 소득세법 제118조의 6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과 동 부가세액의 합과 양도소득산출세액 공제한도(양도소득산출세액×국외자산양도소득금액/당해과세기간 양도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1. ⑬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12. ⑭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부동산 양도금액의 10%를 적습니다.
13. ⑮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⑩란의 세액에서 ⑪란부터 ⑭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4. ⑯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납부지연[1일 3/10,000(2019. 2. 12. 이후 1일 2.5/10,000, 2022. 2. 15. 이후 1일 2.2/10,000)]·기장불성실 등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5%),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란에 기재] 금액을 적습니다.
15. ⑰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6. ⑱ 납부할 세액란부터 ㉑ 환급세액란까지: 계산 결과 신고·납부(또는 환급)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7. 환급금 계좌신고(㉛·㉜)란: 송금받을 본인 예금계좌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8.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9.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성 방 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일반세율 적용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1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1-15	40%
	③ 1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1-20	50%
	④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40	40%
	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이후 양도분)	1-39	60%
	⑥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21.6.1.이후 양도분)	1-46	70%
	⑦ 1년 이상 보유 분양권('21.6.1.이후 양도분)	1-23	60%
	⑧ 미등기 양도	1-30	70%
	⑨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11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⑩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5	40%
	⑪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6	50%
	⑫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1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7	40%
	⑭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8	50%
	⑮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1-1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⑯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71	16~52%
	⑰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73	40%
	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8.1.1.~'21.5.31.양도분)	1-21	50%
	⑲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1-51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⑳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1-53	40%
	㉑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52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㉒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54	40%
	㉓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1-55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㉔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1-57	40%
	㉕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56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㉖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58	40%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성 방 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㉗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47	26~65%
	㉘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84	70%
	㉙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82	60%
	㉚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48	26~65%
	㉛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85	70%
	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83	60%
	㉝ 일반세율에 3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49	36~75%
	㉞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88	70%
	㉟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86	60%
	㊱ 일반세율에 3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50	36~75%
	㊲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89	70%
	㊳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87	6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1-70	30%
	② 중소기업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법인 국외주식	1-62	10%
	③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 법인 국외주식	1-61	20%
	④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1-63	20~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① 주식	1-1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② 주식 외의 것	1-10	
	③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6~35%('12.1.1.이후 6~38%)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5%('18.3.31. 이전)
		1-81	10%('18.4.1. 이후)
	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1-95	20~25%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7. 「소득세법」 제3장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4	20~25%
국외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① 주식	2-1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② 주식 외의 것	2-1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3. 「소득세법」 제3장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2-94	10% 또는 20%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 주식등 종목명	합계							
② 주식등 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해외주식은 ISIN코드와 국가명)								
③ 국내/국외 구분								
④ 주식등 종류코드								
⑤ 양도유형								
⑥ 취득유형								
⑦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⑧ 양도일자								
⑨ 주당양도가액								
⑩ 양도가액(⑦×⑨)								
⑪ 취득일자								
⑫ 주당취득가액								
⑬ 취득가액(⑦×⑫)								
⑭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⑩-⑬-⑭) 전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⑩-⑬-⑭) 비과세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⑩-⑬-⑭) ⑮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⑯ 감면소득금액								
⑰감면종류 감면율								
⑱ 과세이연 신청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① 주식등 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 주식등 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 국내 / 국외 구분 : 국내·국외주식 구분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국외주식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형	국내주식	국외주식
코드	1	2

4.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주식등 종류	비상장주식등 주권 등 비상장법인					상장주식등 주권등 상장법인					기타자산(주식등 양도분)	기타자산(주식등 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국외주식등	
	중소기업 벤처(소액주주)	중소기업(대주주)	중소기업외 법인(소액주주)	중소기업외 법인(대주주)	중소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기업(소액주주)	중소기업(대주주)	중소기업외 법인(소액주주)	중소기업외 법인(대주주)	중소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기업	중소기업외 법인
세율	10%	20~25%	20%	20~25%	30%	10%	20~25%	20%	20~25%	30%	누진	누진	10%	20%
코드	31	34	32	35	33	코스피 43 코스닥 21 코넥스 71	코스피 44 코스닥 24 코넥스 74	코스피 42 코스닥 22	코스피 45 코스닥 25	코스피 41 코스닥 23	51	52	62	61

※ 국외주식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5. ⑤ 양도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양도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양도 유형	매매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코드	1	2

6. ⑥ 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취득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7. ⑦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란: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8. ⑨ 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9. ⑩ 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⑦×⑨)을 적으며,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⑫ 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상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 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11. ⑭ 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실제 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2. ⑯ 감면 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과세이연 특례 신청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3. ⑰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4. ⑱ 과세이연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신청 해당여부에 따라 각각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과세특례에 따른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중소기업 소액주주가 비상장 국내주식(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을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주식등 종목명: 주식발행법인명, 나. 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다. 국내 / 국외구분 : 1 라. 주식등 종류코드: 31 마. 양도유형: 1 바. 취득유형: 1

210㎜×297㎜(백상지 80g/㎡)

작 성 방 법

15.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⑤ 양도유형란에 2번을 적고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 주식 종류에 따라, 34, 35, 33, 44, 24, 74, 45, 25, 41, 23, 51, 62, 61 코드 중 하나만 적습니다.
   ⑧ 양도일자란: 출국일(국외전출일)을 적습니다.
   ⑨ 주당양도가액란: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⑩ 양도가액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시가(⑦×⑨)를 적습니다.

※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4.주식등 종류코드 관련 표에도 불구하고 20~25% 세율(국외주식의 경우 10% 또는 20%)을 적용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개정 2026. 3. 0.>

(4쪽 중 제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분					구분코드	거래상대방 상호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	지급금액	증빙종류(코드)
취득가액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			111					
		취득세			112					
		등록세			113					
		기타부대비용	법무사비용		114					
			취득중개수수료		115					
			기타		116					
		소계								
	②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120					
					120					
	③ 가산항목	취득시 쟁송비	변호사비용		131					
			기타비용		132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			133					
		기타			134					
		소계								
	④ 차감항목	감가상각비			141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기타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등 ⑥ 자본적 지출액	용도변경·개량·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			260					
		엘리베이터 냉난방설치			260					
		피난시설등설치			260					
		재해등으로인한자산의원상복구			260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261					
		자산가치증가등 수선비			260					
		기타			260					
		소계								
	⑦ 취득 후 쟁송비용	변호사비용			271					
		기타소송, 화해비용			272					
	⑧기타비용	수익자부담금			281					
		토지장애철거비			280					
		도로시설비 등			280					
		사방사업소요비용			280					
		기타			280					
		소계								
	⑨ 계 (⑥+⑦+⑧)									
	양도비 등	⑩ 양도 시 중개수수료등 직접 지출비용			290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			291					
		⑫ 계 (⑩+⑪)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음영표시란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증빙종류 코드

증빙종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약서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10

2.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란: 기타부대비용은 취득 시 지출한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3.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란: 원재료비, 노무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를 포함합니다), 설치비, 기타부대비용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③ 가산항목란
   가. 취득 시 쟁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는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기타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제외합니다.

5. ④ 차감항목란: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6. ⑥ 자본적 지출액란
   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하며,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적습니다.

7. ⑦ 취득 후 쟁송비용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기타비용란
   가. 수익자부담금: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을 적습니다.
   나. 토지 장애 철거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비용을 적습니다.
   다. 도로시설비 등: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을 적습니다.
   라.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을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등을 적습니다.

9. ⑩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 지출비용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10.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등 기타경비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유 의 사 항

1.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⑤란 계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⑩ 취득가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3. 이 서식의 ⑬ 기타 필요경비 계란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⑫ 기타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4. 해당 항목의 지출증빙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상세 명세를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

일련번호	구분코드	구 분	거래상대방		지급일	지급금액	증빙종류(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1. 구분 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구분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

2. 증빙종류(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증빙종류(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

3.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금액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적은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 <개정 2026. 3. 0.>

[ ]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안)
[ ]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한: 즉시

신청인 (양도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④ 구분 [ ] 재외국민 [ ] 외국인	
등기권리자 (양 수 인)	⑤ 성 명 (법인명)	⑥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⑦ 주소 (전화번호:)	
⑧ 등기원인	⑨양도계약일자	

부 동 산 등 양 도 내 용

⑩ 부 동 산 소 재 지	⑪ 종 류	⑫면적(㎡)	⑬양도지분	⑭잔금일자

주택(주거용 건물) 양도인의 세대현황 및 1세대 소유주택 내용

구 분	⑯양도인과 관계	⑰성 명	⑱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⑮세대 현황			

구 분	⑳주 택 유 형	㉑소유자 성명	㉒부동산 소재지	㉓취득일
⑲1세대 소유주택 현황				

「소득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또는 대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와 같이 부동산등 양도내용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신청인 제출 서류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84호서식) 또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별지 제84호의4서식) 1부 2. 매매관련 계약서 사본 1부 3.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유 의(안 내) 사 항

1.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2.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사용하기 전에 부동산등 양도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고내용에 따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작 성 방 법

1. 양도자, 양수자 및 양도부동산 내용은 정확하게 적습니다.
2. 2인 이상이 공유부동산을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첨부서류는 한부만 첨부하여 양도자 중 1인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합니다.
3. 양수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4. ②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5. ⑧등기원인란은 매매, 대물변제, 교환, 현물출자, 공매, 경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수용 등을 적습니다.
6 ⑨양도계약일자란은 양도계약서 작성일자를 적습니다.
7. ⑩부동산소재지란은 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까지 적습니다.
8. ⑪종류란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양도하더라도 다른 칸에 구분하여 적습니다.
9. ⑫면적란은 양도부동산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10. ⑬양도지분란은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11. ⑭잔금일자란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적습니다(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 또는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자, 교환계약체결일,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 등).
12. "⑮세대현황" 란에는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상 양도자의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자와 「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의 현황을 적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상 양도자와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생계를 함께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의 인적사항(⑯관계, ⑰성명, ⑱주민등록번호)을 적습니다.
13. "⑲ 1세대소유주택현황" 란에는 ⑮세대현황에 기재된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⑳주택유형은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㉑소유자의 성명, ㉒부동산소재지, ㉓취득일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공부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제용도가 주택인 경우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4. 구비서류는 부동산양도내용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등기권리자(양수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개정 2026. 3. 0.>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내역서

연번	양도주식 기본사항			출국시 신고내용		실제 양도내용			
	양도일	주식등 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해외주식은 ISIN 코드와 국가명)	법인명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가액	필요경비	외국납부 세액	원천납부 세액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26. 3. 0.>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외전출 당시 국내 주소(한글)

④국외전출 후 거주할 국가명	코드	⑤국외전출 후 거주할 외국 주소(영문)

⑥국외전출 후 전화번호(국가번호 포함)	⑦전자우편 주소	⑧국외전출(예정)일

2. 주식등 보유 현황

(주, 원, %)

일련번호	⑨주식발행법인의 법인명	⑩ 주식등 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해외주식은 ISIN코드와 국가명)	⑪보유 주식수	⑫보유 주식 액면총액	⑬보유 지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득세법」 제1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을 신고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78조의8제2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주식등에서 제외되는 국외주식등만 보유하고 있는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26. 3. 0.>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국외전출자(신청인) 인적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외전출 당시 국내 주소(한글)

④전출 후 거주할 국가명	코드	⑤국외전출 후 거주할 외국 주소(영문)

⑥국외전출 후 전화번호(국가번호 포함)	⑦전자우편 주소	⑧국외전출(예정)일

2.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국외전출세

⑨신고일	⑩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⑪취득가액	⑫납부할 세액	⑬납부유예 신청 세액

3. 납부유예 적용요건 검토

가. 국외전출세를 신고할 것	[ ]충족, [ ]미충족
나. 「소득세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 ]충족, [ ]미충족
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신고할 것	[ ]충족, [ ]미충족

4. 납부유예 사유 및 기간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사유	[ ]유학, [ ]그 밖의 사유( )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5. 유학을 위해 국외전출 하는 경우

⑭외국의 교육기관 등 명칭	⑮유학 시작일	⑯유학 예상 종료일	⑰비고

「소득세법」 제118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2에 따라 국외전출자의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납세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 납세관리인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없음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9호서식] <신설 2026. 3. 00.>

(앞쪽)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관리번호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년

② 금융투자업자명 (제출의무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소 (본점소재지)	
⑤ 성명 (납세의무자)	⑥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⑦ 주소 (거소)	⑧ 전화번호	

⑨계좌번호	종목		양도 내용				취득 내용		⑱양도차익
	⑩주식종목명	⑪종목코드	⑫양도일자	⑬양도수량	⑭양도금액	⑮수수료등	⑯취득가액	⑰수수료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주식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국외주식의 양도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란부터 ⑧란까지에는 대상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국외주식의 양도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4. ⑨계좌번호란은 국외주식 양도거래를 위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증권사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⑩주식종목명란은 국외주식의 주식명칭을 적습니다.

5. ⑪종목코드란은 ISIN코드(국제증권식별번호, 12자리)를 적으며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생법인 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6. ⑫양도일자란은 국외주식 등의 양도일자를 연도는 4자리, 월과 일은 2자리로 적습니다.(예시: 2027년 6월 1일 → 20270601)

7. ⑬란부터 ⑭란까지는 양도일자별 양도내용을 기입하고, ⑯란은 ⑬에 해당하는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적습니다.(단위: 개, 원)

6. ⑮, ⑰수수료등란: 해당 국외주식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기재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을 적습니다.(단위: 원)

7. ⑱ 양도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은 ⑬ - ⑭ - ⑯ - ⑰ 로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단위: 원)

297㎜×210㎜(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4(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 ① 영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수익자가 예탁한 자금에 대한 수익지분(이하 "이 조에서 수익지분"이라고 한다)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종합투자계좌 만기 전에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환매 혹은 해지(이하 "환매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에서 환매등이 발생한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2. 1호 외의 경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에서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②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 수 또는 중도 환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
	③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계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④ 종합투자계좌의 명의변경으로 발생한 이익은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생 략)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②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③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③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같은 조 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영 제78조의3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⑤ 영 제78조의3제5항----------.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2조의2(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토지거

	래허가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 등에 대한 확인 등)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나목 및 다목의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사본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⑥ (생 략)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4. (생 략)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1. ~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⑧ ~ ⑲ (생 략)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 26. (생 략) 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 27. ~ 29의19. (생 략) <신 설>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삭 제> <삭 제> ⑧ ~ ⑲ (현행과 같음) 제100조(일반서식) ----------. 1. ~ 26. (현행과 같음) 26의2. ----------별지 제24호의4서식(3)---------. 27. ~ 29의19. (현행과 같음) 29의20. 영 제207조의2제1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9서식에 따른다.

30. ~ 43. (생 략) 44. 삭 제 <신 설>	30. ~ 43. (현행과 같음) 45. 영 제2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9호서식에 따른다.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 ⑪ (생 략) ⑫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⑬ ~ ⑮ (생 략)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주식등 ----------. ⑬ ~ ⑮ (현행과 같음)